

# 해외농업진출 실태분석 및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06. 12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17739

세계농정연구원

농  
6-209

해외농업진출 실태분석 및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06. 12.

세 계 농 정 연 구 원

#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농업진출 실태분석 및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제출자 : 세계농정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 상 무

연구 원 김 중 환

초청연구원 조 성 제

초청연구원 박 현 희

연구보조원 허 원 석

연구보조원 최 경 연



#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제 2 장 해외농업투자의 일반현황

1. 해외농업투자의 현황
  - 1)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 2) 해외농업투자의 추진경위
  - 3) 해외농업투자의 추진현황
2. 해외진출 민간기업의 현황
  - 1)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2) 민간기업 해외투자 관련 설문조사
  - 3) 진출 국가별 시장 특성
3. 민간기업 및 농업이외 분야 진출현황
  - 1) 산업자원부
  - 2) 산림청
  - 3) 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

### 제 3 장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1. 주요국의 해외농업투자 진출현황
  - 1) 해외농업 진출유형 및 사례
  - 2) 해외농업 진출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2. 국가별 특성에 맞는 농업투자 진출 모델
  - 1)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 모델
  - 2) 세계 농산물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 모델
  
3. 해외농업 민간투자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1) 해외농업 민간투자의 문제점
  - 2)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 활성화 방안

### 제 4 장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의 발전방안

1.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현황 및 문제점
  - 1)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의 현황
  - 2)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에 대한 문제점
  
2.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발전방안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농산물의 자유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농산물 생산형태는 급속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낮아 국제적인 작황부진시 부분적인 공급부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완충 역할과 우리 농업 및 농자재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그 동안 일부 간헐적인 정부 및 민간투자 형태로 시도되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임. 따라서 그 동안의 해외투자활동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민간기업과 농업인의 해외 농업 진출 실태분석연구를 통해 해외농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최근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농업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분야 진출 현황과 실태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과 투자대상국간 농업투자 협력이 미흡한 상황 하에서 양국 간 농업투자의 구체적인 협력모델 방안 연구
  - 그 동안 주로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 발전 방안 연구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우리나라의 해외농업투자 현황 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 해외진출 민간 기업과 농업인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기진출한 민간(기업)인 및 농업이외 분야의 진출·투자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함
  
-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 주요국가의 해외농업에 대한 민간투자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농업투자진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국가별 특성에 맞는 농업투자 진출에 대한 시나리오의 구성과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및 해외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시책의 개발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 해외농업환경조사에 대한 민간기업의 호응도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한 분석을 함
  
- 해외농업투자 관련 문헌조사 및 설문, 현지출장조사
  - 해외투자 관련 정부, 민간 부문의 자료, 연구 등 문헌조사
  - 주요 농업투자 상대국에 관한 정보수집 및 자료조사
  - 설문조사 및 일부국가 현지출장조사
  
- 그 동안의 정부 및 민간부문의 해외농업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한 부문을 집중 분석
  
-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



- o 앞으로 우리의 투자 가능성이 큰 국가를 선정하여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를 선행하여 국가별 특성에 맞는 농업투자 방안을 강구
- o 그 동안의 정부, 민간기업 등이 독자적 투자로 그다지 성공적이니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역할 분담 방안과 Matching Fund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 o 정부, 민간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종합 분석하고 그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해외농업 진출에 대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해외농업투자의 활성화로 국내농업기술 전파 및 식량자원 확보가 가능해 질 것임

## 제 2 장 해외농업투자의 일반현황

### 1. 해외농업투자의 현황

#### 1) 해외농업투자의 필요성

- 해외투자는 국내에서의 발전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들을 향유할 수도 있으나 위험 또한 그 만큼 클 수 있음
  - 해외투자를 실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하고,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임
-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평균 경지면적도 협소하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자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표 1>에서처럼 1970년 80.5%에서 1980년 56%, 1990년 43.1%, 2000년 29.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1년 31.1%로 다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2004년 26.8%, 2005년 29.3%임
  - 또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통일 후에는 한반도의 식량공급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우리의 식량을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공급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해외 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증산이 해결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1>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75	73.1	94.6	92.0	5.7	8.3	85.8	100.0	100.0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5	48.4	103.3	63.7	0.4	4.1	22.5	100.0	11.6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8
04(P)	26.8	96.5	54.1	0.4	0.8	7.1	97.1	7.2
05(P)	29.3	101.7	60.8	0.2	0.9	8.5	98.5	7.7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6, www.maf.go.kr

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o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sup>1)</sup>

- WTO체제의 출범 및 수입자유화로 인해 콩, 옥수수 등의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특히 통일을 대비할 경우 곡물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입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농업분야의 해외투자 자유화와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비판시각이 완화됨으로써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해외진출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음
-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 식량 수급불안정 사태를 대비하기 위함
  - 현재의 세계곡물시장을 생산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국내수요 증가 등 세계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지면적의 감소, 기상이변, 환경오염 등으로 곡물생산능력 증대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1) 최용규, “최근 곡물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따라서 세계 식량수급 상황이 어려울 경우 해외농업투자자들의 경영측면에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에서 부족한 곡물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임
- o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개방농정과 1993년 말 UR협상의 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WTO/DDA 협상의 진행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국내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위축시켜 농민들로 하여금 수지맞는 작목을 찾아 나서게 하고, 그 결과 채소, 과수, 축산 및 일부 특용작물 쪽으로 생산이 집중될 것이므로 일부 품목은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하락현상이 예상되기도 함.
  - o 또한 농촌의 생활환경 및 농민의 복지증진향상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고,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자의 유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실정임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해외시장에 상륙하는 우리 농산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있음
  - o 특히 해외시장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들이 현지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 등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들은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시설농업의 높은 기술력, 질 좋은 시설자재 등)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

## 2) 해외농업투자의 추진경위

- 정부의 해외 농·축산단지 개발은 60년대 말 시작됐지만 대부분 실패하였음
  - 현지 교포들에게 분양해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78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르헨티나 야타마우카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천 3백만여 평의 농장을 백만불이 넘는 가격으로 사들였음
  - 그러나 구입후 직접 개발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 상황변화, 담당자의 변경 등으로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감
  - 이 농장은 현재도 현지민들이 불법 영농하는 등 그대로 방치돼 있음
  
- 한편 78년 불법이주자 정착목적으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인근에 농지를 구입(당시 채명신대사)하였으나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음
  
- 민간기업으로는 선경이 81년 미국 워싱턴 주에 9백 90만평의 옥수수 농장을 운영한 것이 시발점
  - 그러나 국제 곡물메이저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저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4년만인 85년 문을 닫았음
  
- 기업들의 해외농업투자는 90년대 들어 활발해 졌으며, 특히 96년부터 기업의 해외부동산 투자가 대폭 자율화되면서 해외진출이 잇따르고 있음
  
- 농·축산분야 해외투자에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값싼 농지가격과 생산비용이며, 대규모로 농·축산단지를 운영하면 생산비가 대폭 줄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삼성물산이 호주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인 토지비용은 평당 300원

- o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도 기업의 투자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됨
  - 농·축산물시장의 전면개방으로 국내 농업기반이 무너졌을 때 곡물 메이저들의 횡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외생산 밖에 없다고 판단
  - 정부는 이에 따라 해외진출 희망기업에 각종 농업기술과 시장조사 활동을 측면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현장 관리의 문제점, 그 밖에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
  
- o 해외 농·축산단지 투자사례는
  - 삼성물산이 96년 11월에 60억을 투자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여의도 20배 규모인 1천 8백만 평의 목장용지를 사들여 축산단지를 운영
    - 호주에서 키운 소를 국내에 들여오면 관세나 물류비용 등을 포함 하더라도 국내 가격의 절반이면 가능
  - 한화는 아르헨티나 팜파스지역에 6천 6백만 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
  - 대륙개발의 중국 두흥농업개발지구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에 1992년에 9백28만 달러를 투자하여 1억1천4백여 만평의 농장을 조성(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97년 이후 개발 중단)
  - 고함물산은 94년에 러시아 연해주와 아무르 주에 러시아 기업과 합작으로 5천7백여 만평의 농·축산단지를 만듦.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3) 해외농업투자의 추진현황

#### (1) 1990년대 이전

- 1980년대 이전의 해외농업개발은 크게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과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구분됨
- 정부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는 남미의 농장(5개소) 개발을 들 수 있음
  - 1968 ~ 81년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3개 지역, 칠레의 1개 지역, 파라과이의 1개 지역 등 모두 24,304ha를 매입(지가 : 459만불)하였음
  - 이 지역에 우리나라 국민 52세대가 농업이민으로 진출하였으나 이 주자 선정과정에서 농업경험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대부분(44세대)이 농업생산 및 경영에서 이탈
  - 위의 5개 농장중 2개(야따무우까, 떼노)를 제외하고는 매입농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거나 이미 매각하였음
- 이처럼 정부주도 방식이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농업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당초부터 농사짓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으며, 현지 정부의 이주 불허정책으로 해외농업개발이 중단된 곳(떼노)도 있었음
  - 또한 농업이민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했으나 비적격자 선발로 인해 사업의 중도포기 및 이탈 등이 발생하여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함
- 한편,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방식으로는 (주)선경의 옥수수 농장개발을 들 수 있음
  - 선경은 1981 ~ 83년 기간 동안 미국의 워싱턴 주의 3,300ha에 농장 임대개발을 추진하여 생산 그 자체는 비교적 성공적 이었음
  - 이는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며, 정부는 국제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약간의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옥수수의 생산 이후 국제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 반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미국 곡물 메이저들의 방해로 산물저장고(Terminal elevator) 등 수송시설이 확보되지 못했음
- 한편 대기업이 해외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비난과 외화유출 시비 등으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음

## (2) 1990년 이후

- o 대륙개발의 삼강평원 개발
  - 대륙개발의 경우 1994 ~ 98년 기간 동안 38,000ha의 농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1992년부터 70년 동안의 사용계약을 체결
  - 1994년에 농업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에 콩 2,222톤(1,010ha)과 밀 1,300톤(520ha)을 생산하여 현지에서 판매하였으며 50%의 수출권을 확보하였음
  - 현지에서의 지속적인 막대한 투자요구 등으로 결국 포기함
- o 고태물산의 러시아 아무르주 및 연해주 농업투자
  - 고태물산의 경우 해외농업투자는 1995 ~ 99년 한-러 합작투자자 자본금 2,500만 달러로 시작
  - 합작투자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측은 구소련 시대의 국영농장을 현물출자하고 고태측은 이에 상응한 현금을 출자하는 형태
  - 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에 2,000톤(2,000ha)을 생산하였는데 이중 800톤 정도를 국내 대두유 가공회사에 납품을 시도했으나 높은 관세와 착유율이 저조하여 포기하였음
- o 해외투자의 실질적 효과미비로 인해 90년대 중반부터 중단되었다가 대북한 식량부족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정부 직접투자 대신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직접투자에서 투자환경조사 사업으로 전환함



## 2. 해외진출 민간기업의 현황

### 1)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o 해외농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의 현황을 보면

-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농장을 운영 중인 민간의 주요 농업개발 현황은 러시아, 중국, 키르기즈스탄, 캄보디아, 몽골 등 5개국 등에 9개 민간기업(인)이 진출해 있으며, 14,723ha의 면적에서 콩, 옥수수, 밀, 감자,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음

<표 2>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국가	업체명	진출 연도	면적	위치	재배 작물	비고
러시아 (연해주)	(주)프림코 (고합:KP케미컬)	'91	4,000ha	미하일로 프카군 프레모보	콩, 메밀, 귀리	'01년 3,500ha 경작 '04 870ha 경작 '05년 5월 현지에서 철수
	(주)유니베라 러시아 (남양알로에)	'98	200ha	핫산군 크라노스키	약용작물	'05년 약용작물 황금에크네시아 재배(200ha)
	길훈 드루취바 (대한주택건설협)	'98	400ha	미할로프카	메밀	'05년 2월 철수
	오린엔탈	'05	600ha	미할로프카	콩	'05년 600ha 콩 재배
	신성 (신성산연)	'00	400ha	따브리찬카 나제전스키	표고버섯, 약초	'03년 5월 철수
	한농복구회	'96	106ha	달리네르 친스크	콩, 채소, 특용작물	'05년 106ha(콩, 옥수수, 양배추, 감자, 배추 등 재배)
	경기도 농업인협회 (항카&코리아)	'00	3,000ha	스파스크노 보세르스꼬예	벼	'03년 500ha 벼 위탁재배 '04년 영농중단
	새마을운동 중앙회	'97	300ha	호롤군	콩, 메밀	'00~' 01년 300ha 콩, 메밀 '01년 12월 철수
	발해영농	'02	300ha	호롤군 루가보이	벼	새마을운동본부농장인수 '04년 3월 철수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98	1,000ha	와지모프카	벼, 콩	'03년 1,000ha 유기농 재배 '04년 벼 200ha 재배 '05년도 10월 철수
	(유)상생영농 :대순진리회	'99	12,000ha	야누친스크군 뽀꾸르치니군 한카이스키군	벼, 콩, 밀	'04년 7,000ha(벼, 콩, 밀 등) '05년 12,000ha(벼, 콩, 보리, 밀 및 축산)
동북아평화연대	'99	15ha	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카	야채	'04년 비닐하우스 5동 야채재배 (고려인지원사업)	

국가	업체명	진출 연도	면적	위치	재배 작물	비고
중국	녹천산업	'98	148만평	길림성	벼	'00년 벼재배(직접재배 27만평 720톤 수확, 계약재배 200만평 5,300톤 매입) '02년 2월 철수
	금릉유통 영농조합	'98	110만평	산둥성	벼, 콩, 땅콩	'00년 벼(11만평 2톤 수확), 콩(3만평, 37.5톤 수확), 땅콩(3만평, 650톤 수확), 배묘목 30만주 생산 '03년 5월 철수
	대륙종합개발	'94	38천ha	삼강평원 (흑룡강성)	콩, 밀	※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97년 이후 개발 중단
	우리집농장	'00	69ha	길림성	콩, 옥수수	'05년 콩 66ha, 옥수수 3ha 재배
키르기스스탄	(사)한농복구회	'00	333ha	이스쿨주	감자, 밀, 채소 등	'05년 감자, 밀, 채소 등 유기농 작물 333ha 재배
캄보디아	제일제당	'96	1,400ha	캄풍스푸주	카사바	'03년~'04년 3,100ha 재배 '05년 1,400ha 재배
인도네시아	한국남방개발(주)	'97	96천ha	칼리만탄	옥수수, 콩, 벼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체개발 추진 ※ 철수
몽골	(주)굿모닝팜	'99	200ha	도르놏도	밀	'01년 콩 1,000ha 경작 '05년 밀 200ha 경작 ※ 빙겐바이르 농장과 공동 운영

자료: 2005년 12월 기준

-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운영 중인 민간 기업이 진출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5개국으로 러시아(연해주), 중국(길림성), 키르기스스탄(이스쿨주), 캄보디아(캄풍스푸주), 몽골(도르놏도)임
-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오리엔탈, 한농복구회, 대순진리회, 남양알로에, 동북아평화연대임
  - 오리엔탈은 2005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600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콩임
  - 한농복구회는 1996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106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콩, 채소, 특용작물 등임
    - 재배작물 중 채소류는 연해주 우수리스크 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에 내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옥수수와 콩은 한국에 수출할 계획

- 옥수수는 유기농 사료 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콩은 청국장을 만들어서 수출할 계획임
  - 대순진리회는 1999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12,000ha에 달하며, 주요 재배작물은 벼, 콩, 밀 등임
  - 남양알로에는 1998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200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약용작물 임
    - 2004년에 황금(관절염치료제)을 50ha에서 시험재배가 성공하여 2005년에는 200ha에 파종을 하였고, 3년간 재배하여 한국으로 보내면, 부가가공을 하여 미국으로 전량 수출
  - 동북아평화연대는 1999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15ha이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음
    - 동북아 평화연대는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단체는 아니고 연해주 작은 물결 운동을 하는 단체로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에서 이사 온 가난한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중국의 길림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우리집농장임
- 우리집 농장은 2000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69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콩, 옥수수 등임
- 키르기즈스탄 이스쿨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한농복구회임
- 한농복구회는 2000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333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감자, 밀, 채소 등임
- 캄보디아 캄풍스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CJ(제일제당)임
- CJ(제일제당)는 1996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1,400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카사바임

- 몽골 도르노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굿모닝팜임
  - 굿모닝팜은 1999년에 진출하였으며, 재배면적은 200ha이고, 주요 재배작물은 밀임
  
-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연해주 아그로(Agro) 상생(相生) 농장
  - 대순진리회가 연해주 농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이고, 자본을 출자하여 「아그로 상생」으로 해외영농시작
  - 2001년까지 2년 동안은 위탁영농을 하였고, 2002년부터 러시아 정부로부터 50년간 땅을 임차하여 2003년 300ha로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1천ha에서 농사
  - 농장 인수방식은 ‘매입’ 이 아닌 ‘임차’로서 50년을 단위로 주 정부와 계약을 체결
  - 임차 내용의 특이한 점은 토지와 시설을 나누는 것으로 “토지는 50년 임차, 시설은 완전 소유”의 개념임
  - 주요작물은 메밀, 콩, 밀, 벼 등이며, 주력 농산물은 콩임
    - 세계적인 콩 수요에 대한 기대감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기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에 콩으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콩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기대
    - 쌀과 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계획 : 콩의 경우 관세장벽<sup>2)</sup>을 피하기 위해 콩가루와 메주, 된장 과 같은 가공식품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계획

## 2)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설문조사

-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진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농업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수집된 설문지의 수는 16부임

---

2) 콩을 수입할 때는 487%의 고율관세가 붙지만, 가공한 콩 식품은 관세가 5% 이하임

o 수집된 설문 결과

- 일반사항

	투자 형태	자본금	투자 자금	품목	진출국가	생산량	처리방법
답변 1	개인	USD30만	USD40만	딸기묘 대두종자	중국 (요녕성,심양시)	딸기묘 : 12억본 대두종자 : 20만ha	딸기묘 : 내수, 한국역수 출, 3국수출 대두종자 :: 내수
답변 2	개인	USD20만	USD250만	더덕, 인삼가공 (홍삼), 고추	중국 (길림성, 동화지구) 중국 (요녕성,단동시)	더덕 : 500M/T 인삼가공 : 300M/T 냉동고추:1,000M/T	더덕 : 한국 인삼 : 중국, 제3국 냉동고추 : 한국
답변 3	사기업	USD430만	USD100만	종자 육종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USD700만	내수시장 : 500만 한국 : 200만
답변 4	사기업	USD250만	10억원	양란 (삼비디움)	중국 곤명	약 5만본	전량 내수시장
답변 5	사기업	USD2,000 만	USD720만	냉동식품	중국 산둥	USD2,400만	내수시장 50%
답변 6	사기업	USD50만	USD10만	농산물 및 기름	중국	USD60만	내수시장 USD50만(90%)
답변 7	사기업	USD1,300 만	USD300만	보리차, 현미녹차	중국	US5,000만	내수시장 USD3,000만(60%)
답변 8	사기업	USD1,300 만	USD560만	식품 (제과제빵)	중국 북경	USD80만	내수시장 USD20만(25%)
답변 9	사기업	USD320만	USD80만	화훼	중국 북경	USD3만5천	내수시장 USD3만(90%)
답변 10	개인	USD99만	USD99만	고추 야채	중국,미국, 일본,태국	건고추 3,500톤	내수시장 350톤(10%) 한국 1,000톤(28%) 제3국시장 2,000톤(57%) 기타 5%
답변 11	개인	USD44만	USD10만	고추재배	중국 사천성	생산량 5,000M/T (수출량 1,000M/T)	내수시장 4,000M/T 제3국시장 1,000M/T
답변 12	사기업	USD30만	USD180만	화훼 생산 유통기지	중국 과오성, 곤명, 연해	USD200만	내수시장 USD50만(25%) 한국 USD120만(68%) 제3국시장 30만(7%)
답변 13	사기업	USD3000 만	USD300만	김치및신선 야채가공품	중국	1000톤	내수시장 600톤 제3국시장 400톤
답변 14	사기업	USD150만	USD150만	각종 농산물 가공제조 (고추,토란, 옥수수 등)	중국 청도	USD600만	내수시장 USD60만 제3국시장 USD540만
답변 15	개인	USD100만	USD100만	방가공사업		400,000kg	제3국시장(일본)으로 전량 수출
답변 16	사기업	USD300만	USD200만	김치 제조 및 절임가 공류	중국, 일본	4,800톤	한국 4,000톤

- 해외농업투자 현황에 관한 내용

	시작 년도	준비기간	정보원	해외농업투자목적
답변 1	1999년	1990~1999 (10년)	직접방문	한중간 농업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목적 선기술보급으로 품질관리교육, 다생산체계 확립
답변 2	1996년	1996~2006 (10년)	직접방문	한국농업환경 악화로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를 해외에서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진출
답변 3	1994년	5년내외	직접출장	해외시장 개척(좁은 국내시장에서의 한계)
답변 4	1998년	2년	개인적인 채널	국내의 경쟁을 피해서 큰 시장으로의 진출
답변 5	1999년	2년	-	값싼 농산물과 노동력
답변 6	1999년	1년 반	통계자료	중국의 값싼 원재료
답변 7	1998년	2년 반	통계자료	원가절약(노동력, 원자재 등)
답변 8	1993년	2년	통계자료	저가의 원자재
답변 9	2001년	1년 반	통계자료	저가원자재
답변 10	2000년	5년	중국 현지	한국내 여건 불충분으로 인한 조건 합리화
답변 11	1998년	2년	-	한국 품종의 고추를 재배하여 일본, 미국, 한국에 수출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
답변 12	1998년	4년	직접 거래 및 업체	규모화, 기업화, 제3국 수출 유통 기지화
답변13	2004년	2년	중국 정부, 인터넷 및 기타 유관기관	김치의 현지시장 개척과 제3국으로의 출구를 통한 김치 및 종가 브랜드의 글로벌화
답변 14	1991년	1년	지인, 언론	원가절감, 인력확보, 수급원활
답변 15	-	-	-	-
답변 16	2000년	3년	-	한국의 3D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 해외농업투자시 투자진출국 제도에 관한 만족도

	세제 및 법률제도	임차제도	농자재 수급제도	유통 및 물류 서비스 제도	수출입 관리제도	인력수급 및 관리제도
답변 1	토지세제개편으로 2005년부터 한시적 조치로 감면	30년 기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개인, 공동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국제기준 (단, 특수품목 에 한하여 통제)	자유
답변 2	토지세 감면조치 투자기업 3년간 면세혜택	30년	개인	미비 전혀 혜택이나 제도 없음	국제기준	자유
답변 3	보통	보통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
답변 4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이하
답변 5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답변 6	보통	보통	보통	보통이상	보통이상	보통이상
답변 7	보통	보통	보통	보통이사	보통이상	보통이상
답변 8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이상	보통이상
답변 9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	보통	보통이하
답변 10	보통	보통이하	보통	보통	매우만족	보통이하
답변 11	보통	보통이상	보통	보통	보통	보통이상
답변 12	보통이하	보통이상	보통이상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이하
답변 13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	보통이하	보통이하	보통
답변 14	보통	보통	보통이상	보통	보통	보통이상
답변 15	보통이상	보통	보통이하	보통	매우만족	보통
답변 16	보통	보통	보통	보통이상	보통	보통이상

- 해외농업투자 진출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의 견
답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li> <li>- 해외 진출 농업 특별기구 설치 및 법적 보호조치 기구 설립</li> <li>- 관세제도 개편으로 수산(원양)물과 동등한 특혜 배려 정책</li> <li>- 다양한 농업정보 조직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묶어서 한국 시장 가격 및 국제시장 경쟁력 제고 정책 수립</li> </ul>
답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 지원</li> <li>- 관세제도 개편</li> <li>- 시장개방으로 동일대우 요망</li> </ul>
답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민의 해외진출(농사)은 기술적 우위로 소득증대에 기여</li> <li>- 농업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 반응이 필요(초기에는 일정한 정착금 지원이 필요하고, 양국간 협의가 필요함)</li> </ul>
답변 4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무엇을 해야할지”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의 기초라고 생각함
답변 5	-
답변 6	-
답변 7	-
답변 8	-
답변 9	-
답변 10	진정한 한국농민의 보호와 유통구조의 현실성을 감안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식품의 존엄성을 높여 질 좋은 상품의 구매형태로 진출되기를 희망함
답변 11	
답변 12	국제경쟁력 강화를 투자 단일화 시스템 종자·종묘 사업으로 전환을 모색(선진국화) - 유통단지 조성 및 지원
답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농업투자 초기 및 안정기간까지의 자본지원 필요</li> <li>- 정부농업 관련기관(기술 및 농업무역, 식품관련 기관)의 정기적 무상정보 및 기술지원</li> <li>- 해외농업투자의 국가적 목적이 “농식량 자원의 안정적 보급” 과 유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정부적인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li> </ul>
답변 14	- 수입관세의 인하(농업정책에 있어 불가항력으로 포기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켜내야 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의 상황은 뚜렷한 정책방향이 부족함)
답변 15	-
답변 16	-



- 설문조사 결과 해외에 농업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투자형태는 주로 개인이나 사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하거나 가공한 제품은 현지 내수시장이나 한국으로의 역수출, 제3국시장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 90년대 후반이후에 투자진출을 하였으며, 10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진 기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으며, 정보는 통계자료나 직접방문에 의하여 획득하였음
  - 해외농업투자의 목적은 주로 중국시장의 경우 값싼 원재료, 노동력, 원자재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보다 넓은 시장으로의 진출 목적도 있었음
  - 해외농업투자시 투자진출국 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세제 및 법률제도, 임차제도, 농자재 수급제도, 유통 및 물류 서비스 제도, 수출입관리제도, 인력수급 및 관리제도 등에서 거의 대부분 보통이나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수출입관리제도 면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16개의 답변중 2개의 답변이 있었음.

### 3) 진출 국가별 시장 특성

#### (1) 러시아(연해주)

##### 가. 개황

- 러시아 연방의 총인구는 2006년 현재 1억 4,254만 명임
  -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극동아시아의 요충지로 연해주 정부가 외국인에게 농장경영 유치를 벌이고 있는 곳임
  - 연해주 인구는 2006년 1월 현재 202만 명이며, 연해주의 수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62만 명임

- 러시아 연방은 2억ha가 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
  - 연해주의 면적은 16.6만km<sup>2</sup>로 한반도 면적의 0.75배에 해당하며, 남한 면적의 1.6배임
  - 연해주는 완벽한 용수로 시설이 되어 있고 현재 벼농사 논 6만 4,000ha, 완벽한 용수로 완비 후 한 번도 경작 않고 방치된 논 4만 3,000ha, 수리 안전답으로 개답 가능한 농지 16만 1,000ha로 총 벼농사가 가능한 면적이 35만 3,000ha 임
  - 급수시설이 된 밭 5만 8,000ha, 급수시설 없이 경작하는 밭 24만 ha, 급수시설 없이 논리는 밭이 57만ha이며, 총 밭농사가 가능한 면적은 87만 8,000ha임
  - 벌채 없이 당장 사용 가능한 초지 170만ha로 연해주의 총 논, 밭, 초지 면적은 257만 8,000ha 임
  
- 러시아의 극동지역 가운데서 연해주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 이면서 통과하는 지역
  - 행정수도인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하여 나호트카시, 우수리스크시 및 스파스크 달리시 등 러시아의 얼지 않는 주요 항구도시와 산업 도시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임

#### 나. 법령 및 제도

- 러시아 연방 정부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대 또는 특혜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조세 감면 및 금융 특혜
  - 외국인 합작기업의 수출입 허가 면제
  -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정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 유치정책
  - 러시아금융공사 설립 운영
  - 외국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 자문
  - 자유로운 과실 송금의 보장

- 자유경제지역 및 자유관세지역 설정
  -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법」 및 외국과 체결한 각종 투자보장 협정에 의한 투자 보장
  - 기타 투자우대조치
-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도 농지 영구 소유권은 없지만 49년 임대가 가능하며, 경자 유전과 토지 공개념이 확립된 국가에서 경영을 위한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 수리 안전답의 관개수로는 외국인이나 회사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이며, 논은 관개 수로의 종속물로서 러시아 토지법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됨(49년 임대)
- 연해주 농업 투자에 대한 연해주 정부의 태도
-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농업투자에 우호적임
    - 외국 농업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대우가 취해지지 않고, 주정부가 판단하기에 진정한 농업투자라 판단되면 농기계 9년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제도, 은행에서 신용 대부를 할 경우 이자의 2/3를 정부가 보조해 줌
    -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정부가 50%, 연방정부가 50%로 모두 부담해 줌
  - 외국인 투자에 차별도 없지만 우대 혜택 정책도 전혀 없음

## (2) 중국

### 가. 개황

-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 큰 국가로 한반도 면적의 44배, 남한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됨
  - 중앙정부 아래 4개의 특별시(Beijing, Tianjin, Shanghai, Chongqing)와 2개의 특별행정구역(Hongkong, Macao),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가 있음
  - 중국의 지형은 남동부 지방의 해수면 높이부터 시작하여 북서부와 서부 쪽을 상승하여 티벳고원을 이루고 있음
  - 겨울철 중국의 기후는 시베리아에서 기원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받고, 여름철 기후는 태평양에서 기원한 온난한 해양성 기단이 특히, 동부평야지대에 비를 머금은 여름 계절풍을 몰고 옴
  - 전체면적은 960만km<sup>2</sup>로 59.3%인 570만km<sup>2</sup>가 산악이거나 고원지대이고, 18.75%인 180만km<sup>2</sup>가 산악, 11.98%인 115만km<sup>2</sup>가 평원이며, 나머지 9.9%인 95만km<sup>2</sup>가 구릉지대임
  - 토지이용형태를 보면, 경작지 면적이 전체면적의 13.54%인 13,004만ha이고, 초지가 41.67%인 40,000만ha임
  
- 중국의 농업정책을 보면, 1978년 이전에는 중국에 사유농장이 없었음
  -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농업은 대규모 국영농장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1978년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은 경제의 지방분권화는 작물과 축종(畜種)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음
  - 사유권은 농업인들 사이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였고 개인소유지를 경작하는 것이 소규모 독립 영농가들 에게는 중요한 투자결정이 되었음

- 이러한 정책의 결과,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쟁력이 있는 소유체계가 형성
  - 개인농장(소규모, 사립)
  - 시립농장(도시근교) 또는 국영농장(대규모, 공공운영)
  - 협동농장(대규모, 지역사회가 운영)
  - 농기업체(대규모, 사립)

o 중국 토지제도의 특징은

-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 소유는 국유 또는 집단소유이며 소유권 변동은 불가능
  - 단, 사용권의 변경은 가능한데, 토지사용권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토지와 지상 건조물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
  - 양도는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이양하고 토지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 재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사적 양도를 의미
- 토지와 건물의 관계로 정부의 토지관련 기관의 업무는 토지에만 국한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설부와 지방정부의 건설부문이 주관하고 있음

나. 법령 및 제도

- o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결의한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이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급속히 증가
  - 1979년에 최초의 투자관련법규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과 1988년에 각각 ‘외자기업법’ 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을 공포하였음

- 또한 1992년에 개최된 제14회 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당의이념으로 결의 하였고
  - 1993년에는 헌법에 동 문언을 명시함으로써 경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한 후 외국투자자들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음
- o 1994년 3월에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요강’을 발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명의로 ‘외국기업 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과 ‘외국기업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공포
- 이러한 조처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정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했던 각종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외자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외자유치정책도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 o 농업투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토지제도 관련 규정이며, 중국토지제도의 특징은
-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 양도와 재양도는 다름
    - 양도는 국가가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이양하고 토지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 재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사적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양도의 경우 양도계약 및 등기문서에 기재된 권리와 의무도 함께 이전됨
  - 토지와 건물의 주관부문이 다름
    - 원칙상 건물이 중심이고 토지는 부차적임
  - 토지관리의 분권화

- 중국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과 「사용권」으로 구분되며, 토지소유는 국유 또는 사회소유화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존재하지 않음
- 「중화인민공화국 토지 관리법」에 의하면,
  -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음
  - 도시토지는 국유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제를 실시하고 있음
- 「토지관리법」에 의하면
  - 국유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국무원에서 관장함을 알 수 있음
  -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토지를 개인이나 단위가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불가능하지만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원칙에 따라 토지사용권 변경은 가능함
  - 농민집체소유토지는 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서 경영 관리하며, 촌내 두 개 이상의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농민집체소유일 경우 촌내의 각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에서 경영 관리함
  - 중국은 토지가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매매는 불가능하며 일정기간 동안의 그 토지사용권만을 매매할 수 있음
- 중국은 1993년 12월 29일 제8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조세환경의 변화를 가져왔음
  -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공상통일세(工商統一稅)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를 도입한 점과, 과거 외자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던 방침을 변경하여 내국기업과 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임

- 세금우대 측면에서 볼 때 이 새로운 세제의 시행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과거보다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음
- o 중국은 외자 유치와 선진기술 도입의 필요에 의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 등 세제상의 특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소득세의 감면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발생한 제1차 년도와 제2차 연도는 소득세를 면제하며, 제3차 년도부터 제5차 년도까지는 50%를 감면함
  - 재투자에 대한 세금 환급으로 외국투자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제10조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을 해당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에 자본으로 투자하고 5년 이상 경영할 경우 외국투자자의 신청에 따른 관할세무당국의 허가를 거쳐 재투자 금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의 40%를 환급함
  - 기타 세금의 감면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내에서 이윤(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사용료 및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와 중국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하였으나 위의 소득이 그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납부함
  -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며 과학연구, 에너지자원 탐사, 통신사업의 발전, 농림목축제품이나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쳐 10%의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을 제공하거나 조건이 유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특정지역과 지구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지구별로 구분하여 보면
  - 경제특구 : 특구내의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징수
  - 연해개방도시 : 연해개방도시의 옛 시내지역에 설립한 생산적 외국투자기업 또는 농림어목축업과 수리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24% 세율로 징수
    - 역내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그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면제함
  - 연해경제개발지구 : 연해지역 시와 현 관할농촌에서 수출증대를 목표로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건설한 농업기술 도입항목, 농산물 생산기지와 농산물기술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연해경제개발지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 기술 집약 또는 지식집약산업, 외상투자금액이 3,000만 불 이상이고 투자회수기간이 긴 항목 등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율을 15%로 함
  - 경제기술개발지구 : 대련, 심양, 하얼빈, 장춘 등 경제기술개발지구로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 내에 설립한 생산성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하여 15% 세율로 징수
  - 변경대외개방도시 : 변경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세무관서의 승인을 통해 기업소득세율을 24%로 함
  - 고신기술(高新技術)산업 개발지구 : 대련, 심양, 장춘, 길림, 하얼빈 등 고신기술 개발지구로 지정된 5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 내에 설립한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15%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
  - 내륙개방도시와 연강(沿江)개방도시 : 연해개방도시와 동일한 세금우대정책을 취함

### (3) 캄보디아

#### 가. 개황

- 캄보디아(King of Cambodia)는 20개 도 및 3개 특별시로 구성
  - 주 아래에는 181개의 군, 1,609개의 읍, 13,456개의 마을이 있음
- 위치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위도 상으로는 북위 10° 에서 15° , 동경 102° ~ 108° 에 걸쳐 있음
- 지형은 3면이 산맥으로 둘러져있고, 중앙부에는 Tonle Sap(톤레삽) 대호수와 여러 개의 강이 분포한 대평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부 평야지대는 저지대 충적평야로 메콩강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음
-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로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고, 남서몬순이 우기를 몰고 와서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순까지 비가 내림. 동북몬순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와서 11월부터 3월까지 건기가 됨
  - 연평균 강우량은 중부평야지대는 1,400mm이고, 산악지대와 해안지대는 3,800mm에 달하기도 함
  - 연평균 기온은 27° C이며, 12월과 1월이 가장 서늘한 기온이고, 3월과 4월이 가장 덥고, 가장 고온 다습한 기온은 40° C에 달하며, 서늘한 저녁에는 10° C 정도임
- 국토전체 면적은 181,035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80%, 남한면적의 약 1.8배에 달함. 이중 21%가 경작지이며, 메콩강과 톤레삽 대호수 주변의 농지가 가장 비옥

- 한 국가의 토양자원에 대한 이해는 그 국가의 농업생산 및 효율증진에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목적에서 작부체계와 관리 면에서의 적지선정은 토양의 형태에 의존하게 되나, 캄보디아에서는 토양자원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편임
  
- 수자원의 경우 캄보디아 전면적의 86%가 메콩강의 유역면적에 포함
  -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하여 남지나해에 방류되기에 앞서 미얀마국경,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을 거쳐 흐름
  - 메콩강의 전체 길이는 4,425km이며, 배수면적은 810,000km<sup>2</sup>에 이룸
  - 캄보디아 정부의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요구와 계획들은 많은 부분들이 수자원과 수자원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수자원 개발은 가난구제(poverty alleviation)와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식량 확보를 달성하고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관개농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 캄보디아 공공분야 정부투자계획의 22%를 관계시설분야에 투입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농업은 국내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수자원분야 특히 관개분야는 식량 확보, 가난극복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환경보전의 경우 산림벌채가 캄보디아 환경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1960~70년대에는 산림과 습지대가 베트남 전쟁에 사용된 폭탄과 고엽제로 피해를 받았음
  - 1970~1980년대에는 Khmer Rouge(크메르 루즈)정권의 재앙을 초래하는 농업정책과 내전으로 피해가 계속 되었음
  -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1990년대에는 목재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고, 1990~1995년 사이에 90만ha 이상의 산림이 벌채되었음

- 1995년 정부는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국가 전체면적의 16.2%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선포하였음

o 캄보디아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정치적 안정이며, 정치적 불안 상황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o 경제상황 또한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정치상황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됨. 정치가 안정되어 있더라도 경제 및 기업 환경이 열악하다면 투자유인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임

o 캄보디아는 2001년부터 제2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국가기능의 재건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임

- 그러나 아직도 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부문 거래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나. 법령 및 제도

##### ◇ 외국인 투자법

o 캄보디아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외국인 투자법으로서 1994년 8월 4일에 제정되었고, 9장 26조로 구성되었음

o 외국인투자법(Law of Foreign Investment)의 주요 내용은,

- 캄보디아 국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투자자(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투자계획과 관련되며, 투자자는 개인이나 법인체가 될 수 있음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는 투자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조직이며,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투자계획의 평가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캄보디아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2개의 기관은 캄보디아복구개발청(The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과 캄보디아투자청(The Cambodian Investment Board)임

o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투자절차와 관련하여

- 투자자는 CDC의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 투자계획의 제출 후 45일 이내에 CDC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CDC의 결정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함
- 투자자는 캄보디아의 헌법에 명시된 토지의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차별을 받지 않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투자자의 사적 재산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유화 정책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봄

o 중요 분야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있음

- 중요 분야는 첨단기술 산업, 고용 창출, 수출지향성 산업, 관광산업, 농업관련 산업 및 변환산업(Transformation Industry), 사회간접자본 및 에너지 산업, 지역 및 농촌개발, 환경보호, 법으로 명시될 특별진흥지역(Special Promotion Zone: SPZ)에의 투자 등임

◇ 토지 관련 제도/법

- o 외국인의 농업투자과 관련한 주요 법률은 토지법으로 농업투자, 특히 농업생산과 관련된 투자는 넓은 농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 현재 캄보디아 국토의 80% 정도는 정부 소유이며, 이중 15% 정도만이 정부에 등록되어 있음

- 이는 농촌사회의 건설을 추진했던 크메르 루주가 토지의 집단화를 추진했고 또한 오랫동안 내전에 시달리면서 토지소유제도가 혼란을 겪었기 때문임
- o 토지정책의 핵심은 토지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유지되도록 하고, 사회목적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소유한 유휴지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구에게 분배하며, 토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 특히, 농가의 15%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임
- o 농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토지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o 토지법 8조와 9조의 내용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법 16조 1항과 동일하며,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영내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 토지법 8조는 토지 소유인의 규제에 관한 것으로서, 캄보디아내의 토지 소유권은 크메르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체로 국한하며, 토지소유를 위해 국적을 속이는 외국인은 처벌받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 토지법 9조는 캄보디아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주식의 51% 이상이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에 따른 캄보디아 법인체가 소유한 기업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o 캄보디아에 대해 농업목적의 외국인 투자의 경우 토지법 59조와 62조는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할 것임
  - 토지법 59조에는 토지사용권은 10,000h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토지사용권은 감축될 것이라는 점

- 토지법 62조는 경제적 목적의 토지사용권은 사용권의 발부이후 12개월 내에 개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사용권이 취소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o 토지법과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조항은,

- 토지법 61조는 토지사용권의 지속기간을 99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70년까지 장기임대를 명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 16조 2항과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

o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주식의 51% 이상이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법에 따른 캄보디아 법인체가 소유한 기업은 제외)은 외국인투자법과 토지법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음

- 따라서 토지사용권 취득을 통하여 농업투자를 해야 함
- 그리고 토지사용권도 취득 후 12개월 이내에 개발을 해야 하는 제약요인이 있음

o 따라서 농업(생산)목적의 투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농장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요구됨

#### ◇ 세법 관련 제도

o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도 재정의 일부를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세수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즉, 법인세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통상 평균 20%

(Standard profit tax rate)의 평균세율을 적용 받음

- Profit tax는 연간 5억Riel 이상의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얻은 이윤에 부과되며, 이때의 이윤은 순이윤(Net profit)임

- 그러나 캄보디아개발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으면 법인세율은 9%로 하향 조정되고,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8년간 면제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외국인투자법 13조와 14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임
  - 14조에는 투자의 배당, 이윤 또는 수익의 분배는 해외에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배분되던 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규정
  - 건축자재, 생산수단, 기계류, 중간재,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세는 면제되고 수출세도 면제됨
  - 특히 수입관세의 경우 농업은 면세 대상 분야임
- 생산된 재화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달 영업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나, 1차 생산자가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은 비과세임
  - 즉,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이후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로 분류되고 있음

#### (4) 키르기즈스탄

##### 가. 개황

- 키르기즈스탄의 행정구역은 수도인 Bishkek 와 7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아래에는 40개의 군, 21개의 시, 29개의 읍, 430개의 마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키르기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정 중앙부에 놓여 있음



- 전체면적은 199.9천km<sup>2</sup>로 남한면적의 약 2배이고 한반도 면적보다 약간 작음
  - 전국토의 약 95%가 산악지역이고, 이중에 약 90%가 해발고도 1,000m 이상이며, 36.2%는 식생이 없는 산악황무지로 해발고도가 3,000m를 넘음
  - 기후는 대륙성기후로 저지대의 무더운 사막기후부터 눈 덮인 고지대의 추운 사막기후 등 변화가 심함
  - 전체국토에서 농업용지의 비율은 약 30.0%이고, 이 중에서 영년생작물 재배면적을 제외한 경작지는 농업용지의 21.0%인 약 126만ha이며, 산림은 국토면적의 13.1%에 해당하는 262만ha임
- o 1876년 키르기즈스탄의 북부와 남부가 러시아왕국에 편입되었으며, 1924년 러시아 연방의 자치주로 편입되었고, 1936년에는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음
    - 1990년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독립이 결정되었으며 1991.8.31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1993년에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였음
    - 1991년 독립된 이래 국가경제는 심도 있는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지만, 심각한 생산 감소에 시달리고 있음
- o 키르기즈스탄은 경제적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세계무역기구(WTO), 관세연합(CU), 중앙아시아연합(CAU)에 가입
    - 이들 기구에서 제공하는 장점을 취하며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독립국가연합(CIS) 중에서는 최초로 WTO에 가입하여 무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 키르기즈스탄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요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은 낡고 빈약한 편임
- 전체 인구는 약 4.91백만 명(2000년)으로 인구밀도는 24.6명/km<sup>2</sup>이고, 전체인구의 약 65%가 농촌에 거주함
- 농업은 키르기즈스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지속적으로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인력의 50% 가까이를 고용하는 산업분야
  - 1990년대 전반에는 독립과 함께 보조금의 대규모 감축과 생산물과 영농자재 상대가격의 변화로 농업생산이 상당히 감소하여, 농업생산은 1995년에 최저를 기록
  - 1990년 후반에는 농업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하여 1996년과 1997년에는 두 자리 수의 성장을 하였음
  - 생산증가는 주로 작물생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곡물생산은 전체 농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곡물이외의 주요 작물은 목화, 사탕무, 담배, 유료작물임
  - 정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은 농업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농업분야의 개혁은 가격의 자유화, 무역의 자유화, 농산물 가공업체의 사유화, 토지개혁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
- 농업분야의 정책목표는
  - 농가소득의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의 일부를 지역이나 국가 식량 기금으로 구매하는 방안
  - 목표사업의 재정을 지원하여 구조개혁을 더욱 발전시킴
  - 토지 및 농업개혁 적극 추진
  - 시장기반시설과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 수직적 농산업의 통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형태의 관리체계 도입
  - 농촌지도체계와 농촌금융기금을 개발

## 나. 법령 및 제도

- 1991년 12월 20일에 제정된 「사유화와 기업정신에 관한 일반적인 기초」에서 토지, 천연자원, 산림, 역사, 문화적 유적지 등을 제외한 경제 부문에서 사유화가 진행 중
  - 국민에게 투자증서를 분배하면서 권리증의 인수, 경매, 공개입찰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도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도록 하였으나, 토지는 임대만 가능함
    - 1994년부터 농업개혁을 시작
    - 2001.9.1일부터 전체농지의 25%는 국가소유로 하고, 75%는 농가에 분배하고 있는 중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 기본법」은 1997년 9월 24일 제정
  - 투자보장, 투자손실보장, 수입자유보장, 금융제도개선 등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내용의 법
  - 이 법에는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보장해 주는 차별금지, 투자조건의 수용 및 보증, 손해보상, 이익금처리, 투자정보제공 등의 조항이 있음
  - 또한 키르기즈스탄 국내법 준수, 보험가입, 회사 및 기업설립조건 등 외국 투자자들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세금 및 국내인의 고용에 관한 조항들이 있음
  - 농기계 부속의 생산 및 판매, 농기계 수리와 생산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의한 농산물의 구입, 저장 및 재판매 등의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키르기즈스탄은 자유로운 투자체계를 가지고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고 있음
  - 농촌지역의 농지 소유, 광물 및 산림과 같은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활동은 내국인 파트너가 필요하며, 때로는 국내 사업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세제 면에서 소득세는 국내 비거주자와 거주자를 포함하여 소득을 가진 모든 자연인에게 부과되며, 농장, 집단농장,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조직의 회원 등은 주요 생산품과 주 소득원에 대하여 토지세만을 납부함
  - 토지세는 농경지, 건설부지, 산업용 교통, 통신 등의 부지, 저수지, 임야, 자연보호, 회복, 여가 또는 문화 역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대상이 되며, 재산의 형태에 상관없이 토지사용자가 토지세의 납세가 됨
  - 농경지의 토지세는 토질, 위치, 면적에 의해 결정되며 비농업용 토지는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에 따라 결정됨

## (5) 몽골

### 가. 개황

- 몽골(Mongolia)은 18개의 도(Aimag)와 3개의 특별행정구역, 1개의 특별시(Ulaanbaatar)로 구성되어 있고, 도 아래에는 343개의 군(Soum)이 있고, 군 아래에는 1,681개의 면(Bag)이 있음
- 전체면적은 1,564.2천km<sup>2</sup> 이며, 인구밀도는 Ulaanbaatar의 127.98명/km<sup>2</sup>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이 1.57명/km<sup>2</sup>에 불과함
- 몽골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아시아 내륙국가로서, 북쪽으로는 3,485km의 국경선을 러시아 연방과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4,673km의 국경을 중국과 접하고 있어, 전체 국경선의 길이는 8,158km임

- 몽골은 해발고도가 높은 국가로 고산지대, 산악형 고지대, 평원과 계곡 등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 이상의 국토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임
- 몽골의 기후는 반건조 한대에 속하지만, 해마다 그 측정치가 다를 정도로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몽골 기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겨울이 6개월로 아주 길며, 겨울철의 날씨 중 반 이상이 맑은 날임
  - 대기가 아주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음
  -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아주 큼
  - 계절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됨
- 국토의 총면적은 156,412천 ha로 남한 면적의 16배에 해당되며, 이중에 123,591천 ha가 농업용지로 남한 농경지 면적의 약 60배에 이룸
  - 가축을 방목하는 초지가 국가 전체면적의 76.9%에 달함
  - 삼림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9.2%에 지나지 않음
  - 초원으로 이루어진 국가임을 알 수 있음
  - 경작지 면적은 총 121.7만 ha로 농업용지의 약 0.98%, 국가 전체 면적의 0.78%에 불과함
- 몽골의 토양은 비옥한 토양으로 대부분 울색토(Chestnut Soil)이며, 고산지대의 툰드라부터 지극히 건조한 사막 토양까지 여러가지 토양이 혼재하여 대단히 다양함
- 몽골의 수자원은 지표수 327억 톤과 지하수 부존량 61억 톤을 합하여 총 388억 톤에 달하며, 지하수의 40억 톤 정도가 다시 강으로 유출 됨

- 몽골의 정치상황을 정리하면
  - 1921년 몽골 인민정부를 수립
  - 1924년에는 몽골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인민민주주의 형태를 취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
  - 민주화 내지 시장경제의 도입은 1986년 제19차 공산당 대회 이후 사회주의 민주화의 추진, 공개성의 강화, 기업 자주권의 확립, 독립채산제의 도입 등 몽골판 페레스트로이카인 “시네치엘(쇄신)”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음
  
- 몽골의 경제현황을 정리하면
  - 몽골은 1988년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하다가, 1989년에 정치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제제도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였음
  
- 몽골의 토지정책은
  - 농지에 대한 확고한 소유권이 없음
  -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이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농업체계의로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제한요소가 되고 있음
    - 확고한 소유권이 없이는 농업인이나 목장 주들이 해당농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임

#### 나. 법령 및 제도

- 몽골은 인구에 비하여 토지가 광활하지만, 농업개발 및 농장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임
  - 주요 식량인 밀의 경우 소비량의 50%를 원조 또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과일, 야채 등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몽골정부는 외국인의 몽골에 대한 농업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993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996년 외국인 투자청(Board of Foreign Investment)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제도운영의 방향이 잦은 정권교체, 정치적 불안정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관련법들 간의 상충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세법, 관세법, 환경보호법 등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음
    -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의 구체적인 감독기관인 지방정부의 반대로 사업을 중도에 철회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제도와 법의 정비 부족으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을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함
  
- 몽골의 농업개발투자과 관련된 주요 법령자료는 외국인투자 관련법, 토지관련법, 세제 관련법, 환경규제 관련법 등인데,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처럼 여러 법률이 농업개발투자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관련법으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등록법, 일반세법, 특별세법, 매출세법 등이 있음
  - 토지 관련법으로 토지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특별보호지구법 등이 있음
  - 세제 관련법으로 일반세법, 특별세법, 개인소득세법, 법인소득세법,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매출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세법, 자동차세법 등이 있음

- 환경 관련법으로 특별보호지구법, 환경보호법, 수자원법, 수자원 및 광천수이용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기타 비정부기관법, 종교법, 수렵법, 총기세법 등이 있음
- o 외국인 투자 관련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은 외국인 투자법임
-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범위, 외국인투자의 분야와 영역, 외국인 투자의 유형과 형태,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
- o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 외국인 투자는 몽골 영토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또는 몽골에 현존하는 기업체와 합작을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몽골 내로 투자되는 유형, 무형의 자산 모두를 의미함
  -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내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이나 자연인(외국인, 몽골내 영주하지 않는 무국적자, 해외에 영주하는 몽골국민)을 의미함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설립되는 경우는 몽골 법에 의해 법인화 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분이 등록 자본금의 최소한 20% 이상 되는 기업만이 설립이 가능
  - 외국인 투자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서비스 및 재화생산 등 모든 분야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서비스 및 재화생산에 있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몽골 내 어떠한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음
- o 몽골은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도 토지를 사유할 수 없으며, 국가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기업도 몽골 내국인처럼 몽골의 토지법(Land Law)에 열거된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임차의 형식으로 토지를 사용함



- 임대차 계약에는 토지의 사용 조건과 기간, 자연 상태에서의 환경 보호와 복구를 보장하는 조치, 연간 토지사용료, 임대인 및 임차인의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몽골의 세금도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됨

- 국세는 국회와 행정부에서 세율을 정하여 몽골 영토 안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을 말함
- 지방세는 각 도의회와 수도 의회에서 세율을 정하여 해당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세금을 의미함
- 국세에는 개인소득세, 사업체 기관의 소득세, 관세, 매출세, 특별세, 자동차 및 원동기세, 상속 및 양도세, 부동산세, 총기세, 시민세, 애견세, 국가 상징의 수수료, 휘발유·디젤 연료세, 수렵·사냥료·사냥허가 수수료, 광물사용료, 토지세, 산림 목재 사용·장작 사용료, 물 사용료 등이 있음
- 지방세에는 광물 이외의 기타 천연자원 사용 허가 수수료, 자연실물 사용료, 광범위 분포 광물 사용료, 약수사용료 등이 포함됨

○ 몽골의 관세법에 의하면, 통관이 허용된 재화에 대해서는 관세율 표에 의거하여 관세가 부과됨

- 관세율 표는 국가최고회의에서 결정함
- 필요한 경우에는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수입품에 대해 무역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관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는데, 몽골의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 외국자본의 투자로 몽골에 세워진 기업이나 기관의 생산물 또는 등록된 자본에 의해 생산된 재화

- 몽골 내에 위치한 관세특별구역이나 보세창고에 들어오는 재화
  - 몽골 내에서의 생산을 위한 수입재료 및 해외에서의 생산을 위한 수출재료
  - 일시적으로 몽골을 통과하는 경우
  - 과실로 인해 몽골 내로 반입되는 경우
  - 장애자를 위하거나 학문지원을 위한 수출·수입재
  - 몽골을 통과하는 재화
- o 몽골의 토지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일부 몽골 국민이 소유하고 있음
- 토지법에 의하면, “목초지, 공공용지, 국가가 특별히 사용하는 이외의 토지는 오직 몽골 국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의 소유와는 달리 사용은 외국인도 가능
  - 토지법에 의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8세에 도달한 국민, 경제단위, 기관이 법에 따라 임차·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법인, 외국인, 무국적자도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기간을 정해 법적 조건,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 토지를 임차·사용하는 국민, 경제단위, 기관은 적합한 법률과 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 o 토지법에 의하면 몽골의 국토는, ① 농목지, ②도시, 촌락, 기타 정착지, ③ 도로, 수송, 통신망지, ④ 삼림자원 지역, ⑤ 수자원 지역, ⑥ 기타 지역으로 분류됨
- 농목지에는 목지, 건초 재배지, 농지, 휴경지, 농목축업용 건축 시설물이 있는 토지 및 기타 농목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가 포함됨

- 외국자본이 투자된 경제단위(합작회사)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법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토지법의 관련 조항을 따름
  - 즉, 외국 자본이 투자된 경제단위에 사용하게 한 토지의 사용료의 규모를 몽골의 경제단위에 임차하고 있는 동일한 종류의 토지와 동일하게 정함
  
- 외국인이 단독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몽골에 (185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생활과 생산의 목적으로 사용료, 기간과 법에 명시한 다른 조건, 규칙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함
  - 다만, 외국인에게 토지를 5년 동안 기간의 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며, 토지의 사용계약을 일회 연장 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함
  - 또한 외국인에게 방목지의 목축업, 밀 등 주요 농산물 생산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외국인은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내기 전에 외국인 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몽골은 유목형태의 축산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몽골 국민의 기초 생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몽골에서는 국내생산의 국외수출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등 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 몽골 내에서 단독으로 밀의 생산과 국외수출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몽골 정부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재정적 지원제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다만, 법인 소득세, 매출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상에서 농업부문 경제 활동자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면세라는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50%의 감면조치가 있으며, 매출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자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 3. 농업이외 분야 진출현황

#### 1) 산업자원부 : 해외석유개발 및 광물개발

##### (1) 해외석유자원개발

- 해외석유자원개발의 사업목적은 해외 유전개발 활성화 및 석유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음
  - 지원 사업은 유전탐사·개발, 생산유전참여, 생산유전운영
  - 근거법령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 해외석유자원개발의 지원조건은
  - 탐사사업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15년 이내, 탐사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개발 및 생산유전 참여 사업은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개발·참여 사업비의 70%이내(공사는 100% 이내)
  - 생산유전 운영사업은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비 부족액의 100% 이내
  - 탐사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성공시 대출 원리금 상환 외에 별도로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며, 사업실패시 대출 원리금을 감면해줌
  - 용자대상자는 해외석유개발사업자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 수리된 자
  
- 석유개발사업자금 용자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 13,415억 원( '99~' 05까지)
  - 2006년 계획 : 3,830억 원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2) 해외광물자원개발

-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목적은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 주요 광물자원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장기·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음
  - 지원 사업은 광물자원 권리취득, 조사, 시설, 기술용역제공, 용자매광, 운영 구매자금 지원 등임
  - 지원근거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제10조
  
-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가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 단위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광제부존파악, 개발 여건 및 예비사업성 분석 등 기술 및 경제적 측면의 사전투자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해외광물자원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되는 광산은
  - 해외자원개발 추진업체의 기술지원 요청광산(지원수요조사 포함), 자원정보조사, 자원개발협력조사, 자원교류 및 협력사업, 직접투자 대상사업 물색 등을 통해 입수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현지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광산
  - 외국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여요청이 있는 광산
  - 기타 정부 간의 협의에 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광산
  
- 조사대상광산별로 대상광물의 개발수입필요성, 투자환경 및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

- o 광물개발사업자금 융자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 3,425억 원( '99~' 05까지)
  - 2006년 계획 : 505억 원
  - 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2) 산림청 : 해외조림사업

- o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해외조림이란,
  - 우리나라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목재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것임
  
- o 해외조림사업의 목표는
  - 우리 자본에 의한 대규모 해외목재자원 공급원 조성으로 장기·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육성
  -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지를 유지하면서 국내 목재수요의 50% 충당
    - 장기조림계획(ha) : ('10) 19만 → ('20) 69.6만 → ('40) 91.1만 → ('50) 100만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확보
    - 2007년까지 15만ha 조림
  
- o 해외조림사업의 추진방향은
  - 수목생장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권 우선 진출
  - 조림목은 원목 또는 가공목 형태로 전량 국내 도입 추진

- 조림사업비 및 육림비 지원으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
  - 조림 진출 유망 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자료 제공
  - 민간기업 한계극복과 1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여 공공기구 설립을 통한 체계 다변화
- o 해외조림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조림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법인이나 개인으로, 지원대상사업은 해외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며,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임
- o 해외조림에 대한 기대효과는
- 국내조림의 한계 극복으로 안정적 목재수급 기반 조성
  - 국내 산림의 보호·육성으로 산림자원 비축 및 공익적 수요기능 이용 확대
  - 국제적 환경운동 참여 및 국가 이미지 개선
  - 사업 진출국과의 우호증진에 의한 국가경쟁력 향상
- o 우리나라의 해외 조림현황은 <표 3>과 같고, 2005년 말 현재 7개국에 118천ha 조림이 완료됨
- 제주도 산림면적(92천ha)보다 큰 면적임

<표 3> 우리나라의 해외조림현황

(단위 : ha)

연도	계	한솔흥대코		이건산업	세양코스모	남방개발	코린도	동해펄프	성원	비고
		호주	뉴질랜드	솔로몬	베트남	인니	인니	중국	파라과이	
합계	117,590 (49,328)	16,267 (16,267)	8,871 (8,871)	10,903 (7,748)	12,979 (9,532)	13,785 (2,760)	47,535 (0)	4,650 (4,150)	2,600 (0)	
'93	8,833 ( 508 )	(508)	-	-	-	*8,325	-	-	-	
'94	2,373 (1,498)	(1,000)	-	-	(498)	650	225	-	-	
'95	2,905 (1,267)	(854)	-	(413)	1,124	311	203	-	-	
'96	6,969 (6,654)	(2,248)	(504)	(1,796)	(956)	1,451 (1,150)	14	-	-	
'97	9,501 (7,076)	(2,035)	(1,515)	(2,016)	(1,000)	1,286 (510)	1,149	500	-	
'98	8,723 (5,810)	(1,400)	(1,300)	(2,010)	1,570	(1,100)	1,343	-	-	
'99	8,851 (5,321)	(2,060)	(998)	(1,513)	-	662	2,868	(750)	-	
'00	11,900 (5,949)	(2,090)	(1,540)	755	(1,619)	-	5,196	(700)	-	
'01	11,966 (5,170)	(1,421)	(1,514)	183	(1,735)	-	6,413	(500)	200	
'02	12,923 (5,529)	(1,612)	(1,500)	170	(1,717)	-	6,024	(700)	1,200	
'03	12,910 (3,116)	(1,039)	-	495	(1,377)	-	8,099	(700)	1,200	
'04	9,379 (1,430)	-	-	602	(630)	-	7,347	(800)	-	
'05	10,357	-	-	950	753	-	8,654	-	-	

주) \*는 '83~' 93년까지 누계, ( )는 융자금 지원 사업



### 3) 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무상원조, 기술협력사업을 통합, 우리 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원조사업을 전담 시행하는 정부기관으로 1991년 4월 1일 설립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연수생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
  - 또한 199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민간원조단체(NGO)에 대한 지원도 실시
  
-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인력협력사업과 개발협력사업, 그리고 민간원조단체(NGOs) 지원 사업으로 이 있음
  - 인력협력사업에는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전수해 주는 연수생초청사업과 전문가, 의료단원, 태권도사범 등의 전문인력파견사업, 한국해외봉사단파견사업 등이 있음
    - 이를 통해 개도국의 인적자원 양성과 의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개발협력사업에는 도로개량 및 발전소건설 등 개도국 기반 산업 조성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개발조사사업과 농업기자재, 사무기기, 약품 등의 원조물자를 지원해 주는 물자지원사업 그리고 개도국내 병원, 학교, 직업훈련원, 연구소 등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해 주는 종합적 협력사업 형태인 프로젝트사업이 있음

-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단체(NGOs)들의 해외원조사업을 지원하고, 전후 복구지원과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복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o 국제협력단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중 절대빈곤 인구 반감 및 기아인구 비율 반감 달성을 위한 ‘농업발전’ 과 빈민가 거주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 에 초점을 두고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o 농촌개발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산업으로서의 농업 진흥, 농가 소득향상을 통한 빈곤감소를 꾀하는 것을 말함
  - 농업은 국가의 기반으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정치경제가 안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함
  - 개도국 산업인구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므로 산업으로서의 농업 진흥과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 빈곤을 감소해 나가야 함
- o 한국국제협력단은 UN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과 공동으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있음
  -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해당 마을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우선하여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농촌개발 방법론에 대한 연수 후 전문가를 파견해 주민들의 개발수요에 따른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소득증대를 위한 대출사업 및 목축사업, 마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학교 개보수 및 도로 확장, 보건 및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화장실 및 부엌 개량, 환경미화 등을 실시

- 사업 초기에 가구조사, 사업수요파악을 실시하고,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 반영하여 마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능력이 제고되었음
- 또한 주민조직을 활성화하여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자조적 책임역량 및 자발적 협동정신을 강화, 값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였음

○ 농촌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는

-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빈곤감소 사업
- 농촌개발 경험전수 사업

○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빈곤감소

-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은  
첫째, 개발도상국의 빈곤인구 대부분이 농촌지역 주민인 점  
둘째, 농촌의 생활 및 소득향상은 도시빈곤의 배경요인인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농촌지역의 안정 및 발전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 개발도상국 사회전체의 안정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
- 한국국제협력단은 미얀마에서 농업 분야 봉사단원 파견을 통해 선진농업기술 전수, 토양보전, 경제성 있는 작물 소개, 육종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농업은 미얀마 GDP의 60%를 차지하며, 전체 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국제협력단의 농업 진흥을 위한 지원이 미얀마 경제발전기반 마련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임

o 농촌개발 경험전수

-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도국 농촌개발정책 및 전략수립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있음
-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인프라정비, 보건 위생, 교육, 환경보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의 농촌개발을 이끌었던 농촌 인프라(진입로, 관개시설 등) 정비, 보건위생, 보건 및 교육훈련을 통한 주민의 생산성 향상(부역 및 화장실 개조, 우물 파기, 학교 건립 등), 자원 관리 및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환경보전(벌목 방지 및 나무심기, 산사태방지시설 건립)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지원
- 개도국의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주민자치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 3 장 농업투자 활성화 방안

### 1. 주요국의 해외농업투자 진출현황

#### 1) 해외농업 진출유형 및 사례 : 일본

- 일본의 타국가에 대한 해외농업진출의 배경은
  - 1945년 이전 동남아 지역에서 자국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농장개발 수입 추진
  - 1973~1974년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발생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여 농산물 개발 수입에 대한 관심고조
  - 1985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기업들의 현지 직접투자가 강화됨
  - 1980년대 중반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동남아, 중국, 남미 등에서 민간의 농장개발 지원 후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남미에 일본보다 더 큰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일본이 지금까지 해외에 확보한 땅은 일본국토의 1.5배에 달하며, 일본 토지의 3배 이상 되는 농토를 다른 나라에 확보하고 있음
- 일본의 해외농업부문 진출의 특징은
  - 일본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주어진 국제가격으로 수입해 오던 단순한 방식을 탈피하여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기업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경작단계에서부터 개입
  - 재배품목과 품종의 선정에서부터 국내 도입 이후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가공단계에까지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의 해외생산, 수입 및 국내판매를 총체적으로 관리

o 일본의 해외농업 추진사례는

- 일본은 해외농업개발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으며 이곳에서 일본 농림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농장개발사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의 해외농장개발사업은 현지국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일본농민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현지국과 51:49 지분으로 생산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100% 일본 소유농장은 아님
- 이와 같은 해외농장개발사업은 일본 해외농업개발협회(OADA)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100% 일본이 소유한 해외농장은 없다고 하며, 지분 또는 공동투자 형식으로 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농장은 1,200만ha 정도임

<표 4>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식료품제조업의 직접투자액(89~04년)

(단위 :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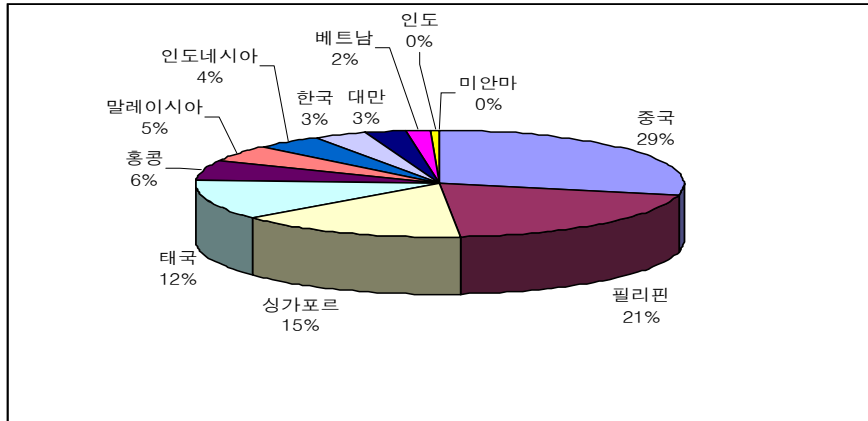
대상 국가지역	직접투자액
중국	1,285
필리핀	910
싱가포르	697
태국	543
홍콩	273
말레이시아	242
인도네시아	192
한국	157
대만	128
베트남	74
인도	20
미얀마	2
파키스탄	0
방글라데시	0
스리랑카	0

자료 : 財務省, 「對外及び對內直接投資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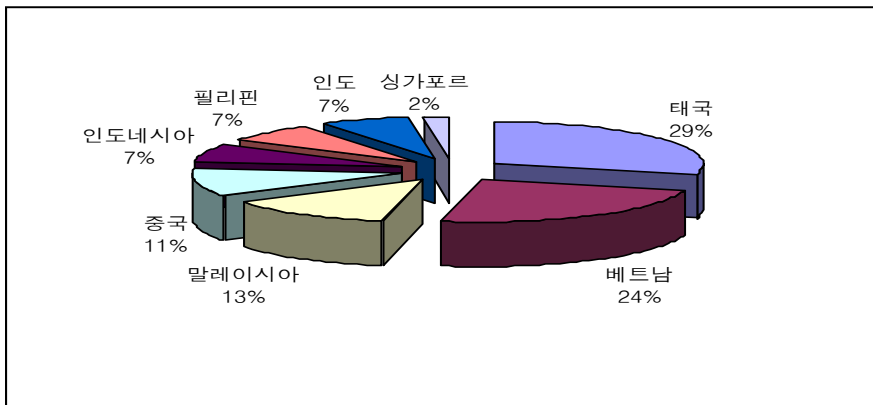
o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외직접투자액

- 1989년부터 2004년까지의 동아시아 각국·지역에 대한 식료품제조업에 대한 대외직접투자액을 보면, <표 4>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필리핀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
- 또 아세안 6개국 및 인도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제조업을 보면, 중장기적(5~10년)인 최적생산거점으로서, 시장개척에 앞서 중시되어진 중국을 앞서 태국, 베트남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1> 식료품제조업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별 대외직접투자금액



<그림 2> 일본기업의 중장기적인 최적생산거점(식품·농수산가공 47사)



자료 : 젠티로, 「在アジア日系製造業の經營實態」, 2006년より日本總研作成

- 식품산업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상황
  - 일본의 식품산업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은 대부분 변동이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역을 보면, 중국, 태국으로의 식품제조업의 진출 숫자가 많음
  - 최근의 해외진출은 현지에서의 판매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현지판매가 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부메랑 효과 등에 의해 일본으로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에 대한 압박에 대한 두려움은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짐
  - 또 현지진출기업에 의한 원료 등의 조달도 진출국·지역 내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의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고려되어짐

## 2) 해외농업진출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 일본

- 일본의 해외농업은 해외농업개발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으며 이곳에서 일본 농림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농장개발사업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협회는 민간기업 또는 정부, 정부기관이 협력해서 해외농업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제언, 민간기업 등이 행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조언 및 지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등을 행하고 일본국 농업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더욱 해외지역에서의 농업 개발에 기여하는 일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임
- 해외농업개발협회는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하고 있음
  - 해외농업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제언
  - 민간기업이 행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에 대한 지도 및 조언



- 해외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정부 또는 민간기업 등의 제사업에 대한 협력
  - 해외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 해외농업개발협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전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 일본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주요사업은 교류추진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신규사업조사)이 있음

### (1) 교류추진사업

- 자료의 수집·정비 및 제공
  - 매년 국내외의 정부기관, 민간 및 국제기관 등이 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와 상관되는 관련서류, 보고서, 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정비함(약 1,000가지). 홈페이지는 협회가 행하는 세미나, 조사안건 등의 정보를 매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음
  - 해외의 농업개발동향, 지역개발동향 등을 게재한 계간지 「해외농업개발」을 통권 267호부터 270호까지 발행하고 회원 및 관계기관에 배포함
- 강연회 등의 개최
  - 흑룡강성내 각지의 농산품 생산사정과 자연식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광고할 목적으로 전시회가 행해짐
- 「중국농업위원회」의 활동
  - 회원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해 중국 각성에 대한 농업관련 자료의 수집, 제공

- 일본에 온 농업분야의 관계요인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일과 함께 주일 주중대사관을 비롯하여 관계제단체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함
  - 요녕성(遼寧省)으로부터 농업연수생(벼, 채소, 농업기계, 농협제도)을 약 5개월간 받아 아끼다현(秋田縣) 북부지역의 농가에서 실천 연수 및 재단법인 아시아농업협동조합진흥기관(IDACA)에서 농협제도에 중점을 둔 연수를 행함
- o 「전문위원회」의 활동
    - 매년 수시전문위원과의 회합의 기회를 만들어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행함. 또 협회가 정부기관 및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으로부터 수탁한 일부의 조사·연구업무에 참가
  - o 「신규사업조사」 등의 실시
    - 조사·검토 주제는
      - 캄보디아의 식품생산, 가공사업의 검토
      - 동남아시아 제국으로부터의 농업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의 검토
      - 환경관련 농림업사업형성의 검토

**(2) 국고보조사업(신규사업조사) : 해외농림업개발협력촉진사업**

- o 일본의 민간기업 등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림업관계의 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을 얻어서 다음의 사업을 행함
- o 우량안건발굴·형성사업(국고 50%, 민간 50%)
  - 민간 기업이 해외투자를 원할 시 사전조사 지원 사업( '06년 현재 시행중인 사업)

- 미얀마, 태국, 필리핀에서 케냐프 작물재해 시험조사
  - 필리핀 피나초보 화산 남부지역 농장개발 조사사업
  - 베트남 조생수 자원 이동 조사사업
  -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멕시코 지역 호호바 재배 및 가공 산업 조사
- o 지역별 민간 농림업 협력중점분야 검토 기초조사사업(보조율 : 9/10)
- 동남아 지역 중 농림 축산업 향후 일본 민간투자 예상분야에 대하여 조사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06년 캄보디아를 선정하여 20명 조사단원으로 2회 조사
  - 조사는 농림축산분야에서 민간의 사업전개 가능분야를 파악하고 사업영역 · 형태의 검토, 민간 프로젝트 안건의 수집에 중점을 둠
  - 위의 조사결과는 분야별로 취합하여, 관심기업 · 단체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
- o 해외농림업투자원활화사업
- 민간 농민 또는 농업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 투자후보지 조사 발굴, 현지국 정부와 투자조건 협상, 현지 농업 여건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로 제공 및 상담
  - 민간농업인 해외투자시 성공률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이 투자시 필요한 각종 현지국 농업생산 유통·판매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집을 발간하여 현지 진출 일본 농민에게 배포
  -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현지국 안내 및 현지조사 지원
- o 식량안보, 환경보전, 에너지 확보 및 지구보전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현지 조사사업
- '06년 라오스

- 국고수탁사업으로 농림성으로부터 해외농림국제협력 전략사업을 수탁하여 시행
  - '06년 캄보디아 콤포스트 관개배수시설 강화사업
  - '06년 필리핀 카디기란 소규모 관개개발계획 시행
  
- 기타 정부 및 민간 수탁사업 수주 시행
  - 필리핀 사탕수수 농장개발 사업(JAICA로부터 수주)
  - 필리핀 향토 수종 직접 투자 확대 협정

## 2. 국가별 특성에 맞는 농업투자 진출 모델

### 1)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 모델

- 효과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시장환경 분석이 우선시 됨
  - 시장환경은 투자대상 기업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
  - 외부환경은 거시경제 환경, 시장, 경쟁자, 소비자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자사의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 요소를 찾아내어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농업투자 진출시 내수시장 공략은 품목별, 지역별, 시장세분화 전략 모델 도입이 필수적임
  - 시장세분화를 위한 모델은 SWOT분석을 통한 경쟁우위 요인을 분석하고
  - 앤소프(Ansoff)의 시장확장 전략 모델을 응용하여 전사적 차원의 투자시장과 농산물 제품 결합을 시도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o 1단계 : SWOT 분석

- SWOT분석은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4 요소를 강점 · 약점 · 기회 · 위협(SWOT) 이라고 하는데, 강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기회는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위협은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임
- 각 요인별로 투자진출국의 법제도, 영농조건 그리고 마케팅환경과 유통구조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함

<그림 3> SWOT 모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SWOT 분석을 통해 투자기업의 투자국 시장 환경의 경쟁력을 사전 분석함

o 2단계 : 앤소프(Ansoff)의 제품/시장 확장 전략 모델의 응용임

- SWOT 분석을 통해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입전략에 대한 경쟁요인을 분석 한 후 투자시장과 농산물 제품의 결합을 추정함
- 전략은 4가지로 구분하여 시장침투전략, 신제품개발 전략, 신시장 개척 전략, 다각화 전략으로 세분화 할 수 있음

<그림 4> 앤소프(Ansoff)의 제품/시장 확장 전략

		시장	
		기존	신규
제품	기존	시장침투전략	신시장 개척전략
	신규	신제품 개발전략	다각화 전략

- 첫째, 시장침투전략은 현재의 농산물(제품)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킴으로써 기업성장의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함
  - 둘째, 신시장 개척전략은 현재의 농산물(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성장하는 전략을 의미함
  - 셋째, 신제품 개발전략은 새로운 농산물(제품)을 개발하여 성장하는 전략을 말함
  - 넷째, 다각화 전략은 현재의 농산물(제품) 및 시장과 관련이 없는 분야로 다각화 하는 것을 말함
- o 내수시장 공략은 국가별 농업환경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기업의 경쟁력 분석이 선결과제이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진출에 대한 차별적인 전략화가 필수적임
-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 진출·진흥을 위한 조사사업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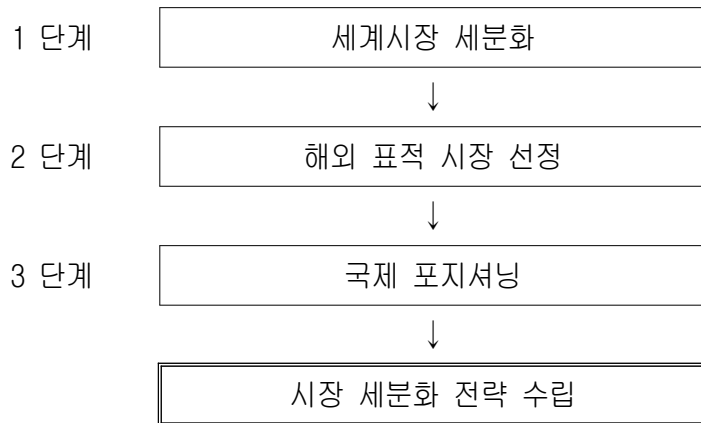
**2) 세계 농산물시장 공략을 위한 진출 모델**

- o 세계 시장은 200개 이상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산물 시장은 각국별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에 세계 농산물 시장 진입은 잠재적 농산물 수요자를 중심으로 국별·지역별 차원에서 전략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o 시장세분화 전략임

- 첫째, 세계시장 세분화 단계로 국가간에 비슷한 소비형태를 보이는 소비자 집단을 군집화 하는 것임
- 둘째, 해외표적시장 선정 단계로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농업투자 진출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임.
- 셋째, 국제 포지셔닝(positioning) 단계로 농산물 투자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용도, 사용자, 경쟁자 그리고 소비자 문화에 따른 전략화 수립

<그림 5> 시장세분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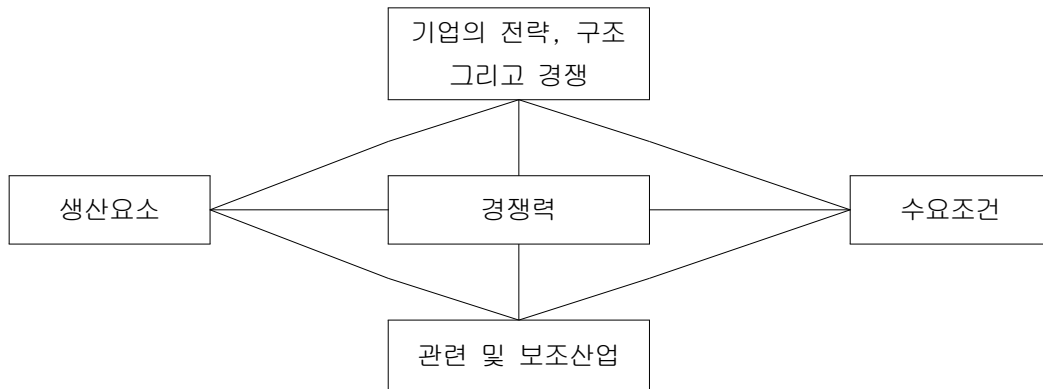


o 시장세분화 전략을 통해 세계농산물 시장을 분석한 후 해당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을 통한 장기적 투자 전략을 수립

- 글로벌 경쟁분석 모델은 포터(M. Poeter)의 다이아몬드 이론이 응용·활용 됨
- 포터(M. Porter)는 1990년 각국의 경쟁우위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였으며, 포터의 국가경쟁력 이론은 경쟁우위의 근본을 크게 네 가지 요소에서 찾고 있음

- 부존생산요소(factor endowment)
- 관련 및 보조산업(related and supportive industry)
- 수요조건(demand condition)
-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firm strategy)

<그림 6> Porter의 국가경쟁력 모형



- o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는 각국의 경쟁력 있는 사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기본요소로서는 자연자원, 기후, 위치 그리고 인구분포 등이 해당됨
  - 고급요소로서는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인력, 연구시설, 기술노하우와 같은 것을 의미함
  - 특히 농업분야는 투자 지역의 영농조건(인력, 기후, 토양)과 법제도 요인 분석이 중요함
- o 수요조건은 경쟁우위를 더욱 개선·발전시키는 자극을 주는 국내수요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임
  - 세계 농산물 수급현황, 해당지역의 경쟁우위 농산물 수요분석



- 관련 및 보조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과 관련산업의 기술진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해외농업투자의 조사정보 업무의 과학화, 가공을 비롯한 유통구조 및 산업구조 요인의 분석이 필요함
-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은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 수록 국제경쟁력이 크게 증가한다고 봄
  -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국가의 진출전략 분석이 필수
  - 이에 상대국과의 해외농업투자 협정을 통한 제도적 경쟁력 강화분석

### 3. 해외농업 민간투자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1) 해외농업 민간투자의 문제점

- 해외농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의 문제점은
- 해외농업투자는 농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단기간의 수익률이 낮아 장기적 투자와 규모 영농이 필요하지만, 해외진출 민간기업인이나 농민은 초기 집중 투자 및 단기적 투자비 회수 욕구와 소규모 영농으로 중도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 첫 해의 과다한 투자는 수확이 적을 경우 다음해 영농자금을 마련치 못하여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
  - 농업투자는 적어도 2~3년 뒤에나 결실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견디지 못할 수 있음

- 민간의 소규모 해외농업투자로 농작물 재배에 성공해도 유통과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패 확률이 높음
  - 초기에 농작물 재배에 성공해도 종자 · 비료 · 농약 등의 농자재, 농기계 등 농자재의 지속적 수급과 농산물 저장창고나 운송수단 등 농업 인프라 시설, 유통 및 판매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지 영농조건이 유리해도 대규모 농장투자에는 관개시설, 저장창고 및 가공시설 등이 필요하여 소규모의 민간 투자자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현재 해외진출 기업은 CJ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소기업이나 몇몇의 개인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진출하고 있어 대규모 토지구입, 농장관개시설(관개, 저장, 가공)등 에의 투자가 어려운 형편임
  
- 법령, 제도, 관습 등의 이해부족으로 기후, 곡물가격 및 정치적 상황 등으로 농산물 가격 편차가 심하여 투자의 위험성이 상존
  - 해외농업은 그 나라의 법령, 제도, 관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쉬움
  - 한국의 해외진출 희망 단체들은 회사설립 등 정식절차에 의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몇몇 그 나라 정부 관계자들과 친분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
  
- 곡물가격 및 정치적 상황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편차가 심하여 민간 투자자의 위험성이 상존
  
- 인건비는 저렴하나 노동의 질과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양질의 대형 농기계 기사 등은 인력 이농현상, 농장피폐 등으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임

- 민간 기업이 해외농업 직접투자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현지생산물이 해당국내에서의 처분이 어려울 때 이를 한국내로 거의 반입할 수 없다는 점임
  - 특히 콩, 옥수수 등은 수입시 대부분 관세가 300% 이상이 되어 이를 면세(0%)내지는 MMA 수입관세(0~2%) 수준으로 수입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점임
- 민간기업이 해외농업 직접투자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지 관리의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음
  - 철저한 관리(수확물 도난, 농기계의 수리, 보수 등)를 위해서는 한국인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이 많이 듦
  - 현지인들을 고용할 때는 과다 비용청구, 수확농산물의 도난방지의 어려움이 있음
-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음
  - 특히 업무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성격의 종합적인 기구가 부재함.

## 2) 민간의 해외농업 투자 활성화 방안

- 민간투자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를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 대북식량 지원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해주 지방이나 중국의 동북 3성 인근의 투자기업에게는 생산물(쌀, 콩, 옥수수)의 일정부분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

- 콩, 옥수수 등 국내 공급부족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량의 TRQ를 설정하여 '0' 세율 내지는 저율관세(1~2% 수준)로 수입을 허용 하되, 단 유통공사가 일괄구매하여 판매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동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안
  - 동남아 등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생산한 쌀 등의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이를 대북 식량지원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 콩가루, 메주 등 가공식품의 경우도 국내농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혜 관세,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 단,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해당국내에 반드시 판매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 o 현지 토지 임차료는 싸지만 건물 신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은 물론 생산이 없는 1, 2년의 최소 운영비 등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특히 투자자본의 회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과 동일 내지 인근지역에서 한국국제협력사업단(KOICA) 사업의 일환인 전문가 파견, 훈련 등을 실시
  - o 개발협력기금(EDCF)도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분야에 우리기업을 알선하여 연결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o 상시 개발 예비비를 준비하여 민간기업에서 투자여건 등 현지 환경조사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o 정부는 외교교섭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지역 개발, 품목개발 을 요청 하는 가를 항시 파악토록 하여 즉시 민간기업에 전달하거나 우량기업을 선정 알선토록 함
  
- o 특히 정부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본의 해외농업개발협회와 같은 사단법인을 별도 설립하거나
  - 설립비용이 과다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구에 부수 기능을 추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조언, 조사, 정보수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 4 장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의 발전방안

### 1.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현황 및 문제점

#### 1)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의 현황

-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의 목적은 세계 주요 농업지대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외국인 농업투자제도 등을 조사하고 국가별·권역별로 비교·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활용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투자환경조사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겪게 되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간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농산물 교역 여건개선
  - 정부가 필요로 하는 농업부문 FTA·DDA 협상 관련 자료 제공

<표 5>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7~' 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사업량(국가)		10	2	2	2	권역별조사
사업비	계	1,668	200	200	200	2,000
	보조	1,668	200	200	200	2,000

- 조사실적 : 11국 2,061백만 원(1997~2005)
  - 정부정책조사 : 9개국(러시아, 중국,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민간요청조사 : 2개국(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 정부가 직접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자금 지원한 사례는 없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정부의 지원에 의한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사업명은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주관은 농림부, 사업담당은 한국농촌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92백만원(2001~2005년 까지)임

<표 6> 해외농업환경조사 내용

구분	지원액(백만 원)	대상국
계	2,061	11개국
1998까지	758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1999	120	중국(길림성)
2000	200	중국, 몽골
2001	200	러시아
2002	191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2003	200	캄보디아, 중국(산둥 성)
2004	200	베트남, 필리핀
2005	192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 세계 주요농업지대의 농업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농업현황, 제도 등에 대한 농업투자 환경조사와 수집된 자료의 국가별·권역별로 DB화하여 민간기업·농업인의 현지진출시 자료제공 지원과 정부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농업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집되어진 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실적
  - 조사보고서 배부 : 자치단체, 농림부등 유관기관, 경제인연합회 등 기업인단체, 농업경영자연합회 등 농업인단체, 해외투자상담 기업 및 개인에게 제공(총 125건 946부)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 한국농촌공사 홈페이지에 해외 농업 투자정보센터에 조사보고서를 게시하여 민간이 수시 열람토록 함 (조회실적 : 총 6,697회)
  - 해외농업투자 관련 상담실적 : 182건

<표 7> 해외농업투자 상담 실적

계	민간기업	행정기관	개인
182	128	25	29

- o 해외농업투자환경에 대한 조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 과거 해외농업개발은 '80년대 초까지 정부 주도로 남미지역에 투자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미흡과 사후관리 부실로 성과가 미흡했음
  -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 수입은 국내 농업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
    -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통일 이후 효율적인 식량 확보에 필수적임
  -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필요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부직접 투자의 위험부담 경감이 필요
- o 해외농업투자 사업의 추진 경위는,
  - 주요농산물 해외개발 수입방안을 '96 국가정책개발 연구과제로 확정 (재정경제원, '96.4.2)



- 곡물수급대책협의회 개최(농림부, '96.5.9)
- 물가안정대책회의시 해외농업개발방안 검토(재정경제원, '96.5.20)
- 국제곡물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농림부, '96.5.27)
- 해외농업투자기술지원단 설치(한국농촌공사, '96.9.23)
-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주 정책조사(사전조사)실시( '97.3.22~4.16)
- 러시아 연해주 정책조사(본 조사)실시( '97.6.17~7.19)
-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민간요청조사 실시( '97.3.22~4.16)
- 중국 동북3성 정책조사 실시 ('98.11.23~12.19)
- 중국 길림성 대안고하도 동건지구 1단계 정책조사 실시('99.8.16~9.12)
- 중국 흑룡강성 밀산 · 호림지구 정책조사 실시 ('00.7.20~8.10)
- 몽골 정책조사 실시 ('00.8.14~9.7)
- 러시아 연해주 정책조사 실시 ('01.7.17~8.8)
- 미얀마('02.5.8~6.3) 및 키르기즈스탄('02.7.30~8.14) 정책조사 실시
- 캄보디아('03.8.4~8.27) 및 중국 산둥성('03.9.22~10.6) 정책조사 실시
- 베트남('04.5.31~6.21) 및 필리핀('04. 8.30~9.20) 정책조사 실시

<표 8> 해외농업투자 조사실적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조사국가	조사기간	조사분야	조사인원	사업비
계					992
2001	러시아 (연해주)	'01.7.17 ~ 8.8(23일간)	관개배수외 11개 분야	11명	200
2002	미얀마	'02.5.8 ~ 6.3(27일간)	관개배수 외 8개 분야	9명	200
	키르기즈스탄	'02.7.30 ~ 8.14(16일간)	관개배수 외 3개 분야	4명	
2003	캄보디아	'03.8.4 ~ 8.27(24일간)	농업 외 7개 분야	8명	200
	중국:산동성	'03.9.22 ~ 10.6(15일간)	농경제 외 9개 분야	10명	
2004	베트남	'04.5.31 ~ 6.21(22일간)	농업 외 7개 분야	8명	200
	필리핀	'04.8.30 ~ 9.20(22일간)	농경제 외 7개 분야	8명	
2005	아르헨티나	'05.5.18 ~ 6.14(21일간)	농업투자 외 7개 분야	8명	192
	우루과이	'05.5.31 ~ 6.6(7일간)			
	러시아	'05.11.22 ~ 11.27(6일간)	해외농업성공·실패사례 조사 외 1개 분야	2명	
	중국	'05.11.28 ~ 12.5(8일간)	해외농업성공·실패사례 조사 외 2개 분야	3명	

※ 총 조사실적 : 11국 16지구

- 정책조사(9국 14지구) : 러시아 아무르주, 러시아 연해주(2회), 중국 동북3성, 중국 길림성 고하도지구, 중국 흑룡강성 밀산·호림지구,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산동성,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9국 14지구)
- 민간요청조사(2국 2지구) : 인도네시아(남부칼리만탄), 키르기즈스탄(2국 2지구)

- 아르헨티나('05.5.18~6.14) 및 우루과이('05.5.31~6.6) 정책조사 실시
- 러시아 연해주('05.11.22~11.27) 및 중국 동북지역('05.11.28~12.5) 보완조사 실시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에 대한 사업내용은
  - 정책조사로, 해외지역 농업개발 투자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 장기적·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하는 조사사업
  - 민간요청조사로 민간기업 등이 해외농업개발 타당성조사 또는 기술지원업무를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민간지원 조사사업
  
- 해외농업개발 투자 유망 또는 희망 국가를 선정하여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농업투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 해외농업투자지원단의 업무내용은,
    -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및 조사 보고서 작성
    - 해외농업투자정보 수집자료 민간 제공 및 상담
    - 전문가 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
    - 보고서 민간기업(인),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제공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 이후 ~ 계속
    - 집행절차 : 농림부 자금배정 → 농업기반공사 자금집행
    - 지원방법 :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반공사
    - 조사계획 수립·시행, 자료 분석 및 DB화, 투자 상담 및 자료제공

## 2)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에 대한 문제점

- 정부 정책 조사 위주로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투자 민간기업(기 투자 민간기업과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보다 막연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함
- 민간요청 조사도 조사비용의 한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못한 점
- 대부분 조사가 단발성에 그쳐 장기간 자료축적이 되지 못함으로 실제 투자시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자료가 됨
- 해당국가의 농업외의 다른 시계열상의 자료 부족으로 전반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조사전문기관이 부재함.

## 2.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발전방안

### (1) 대외적 사업홍보 강화

- 해외농업투자환경 소식지 발간
  - 내용 :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 해외농업통신원 및 현지 진출 농업인등으로부터 수집한 현지 농업투자관련 자료 및 조사된 민간투자 성공·실패 사례 등을 내용으로 소식지 발간
  - 배포회수 : 연 2회(상, 하반기)
  - 배포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 농업관련 유관기관, 해외진출 민간기업 및 농민단체 등에게 배포(해외농업투자 상담자 및 해외농업투자 홈페이지 회원가입자들에게는 전자메일을 통해 소식지 발송)

- 사업발전 세미나 개최
  - 내용 : 국·내외 해외농업투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개최시기 : 매년 말
  - 초청대상 : 국내 및 일본, 중국 등 해외농업투자 전문가

## (2) 사업의 명확한 추진목표 설정 및 조사대상국의 다양화

- 기존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농업투자 정보 수집·제공에서 탈피하여 투자 유망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사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
- 민간부문의 세계 각국 해외농업투자 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CIS 국가 등 기타 대륙별 투자유망국에 대한 해외농업 환경조사 실시와 현지 자료수집 촉진

## (3) 조사결과의 주기적 자료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으로 조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 제고

- 조사시기가 5년이 지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2개국씩 분야별 보완조사 실시 및 민간부문의 해외 농업투자 성공, 실패사례 등을 조사하여 민간에 제공
- 효과적인 해외농업환경조사체계 확립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보고서 작성
  - [전문가 구성 → 분야별 사전 자료수집 → 검증을 통한 자료 보완 → 현지조사]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지조사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4) 지원단 역할 및 민간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해외농업관련 최신 법률정보 수집 게시
  - 내용 : 러시아 외 10국 등의 기 조사 완료 국가의 조사 자료중 신규자료 보완이 가능한 법률·제도 및 투자·무역·통상 등 관련 최신자료를 매년 현지 공관 및 통신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민간이 열람토록 함
  - 자료수집 시기 : 매년 상반기 중
  - 자료수집 대상국가 : 기조사 완료국가를 우선 대상으로 자료 수집 하되 미 조사된 국가도 확대운영
  
- 해외농업진출자(민간업체 및 개인) 및 상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해외농업투자 현지 진출업체 및 개인과 공사 보유자료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성공 및 실패사례 조사)
  - 공사 내방 상담자 및 인터넷 자료 제공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결과 Feed Back으로 차년도 사업개선 자료로 활용
  
- 해외농업투자 정보센터 홈페이지 확대 정비
  - 현재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현황 및 조사자료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홈페이지를 해외농업투자 회원가입·관리, 국가별 추가 수집자료 업데이트, 조사 미실시 국가의 농업투자관련 정보 등 게시와 해외농업진출 민간 부문과 향후 진출 희망자들 간의 정보교환의 장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재설계 및 확대 정비
  
- 해외농업통신원 확대 운영
  - 목적 : 기존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민간기업 및 해외농업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 농업 현황 및 투자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민간에 제공

- 대상국가 : 13개국(조사 완료국가)  
중국(동북 3성, 길림성, 흑룡강성), 러시아(연해주),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파라과이
- 내용
  -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통신원으로부터 현지 일반농업 및 투자현황, 민간진출 성공·실패 사례 등 자료수집
  - 공사와 현지 해외농업투자 진출 민간단체와 정보교류 중개역할 담당

**(5)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지원 작물 확대 요청으로 해외농업환경 조사사업 활성화 계기 마련**

- o 현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 밀, 콩, 면화 외에 국내 자급율이 낮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파악하여 사업신고 및 자금지원 대상 작물의 범위에 포함토록 제도 개선 건의
  - 그리고 수입관세는 면세내지 MMA 수입관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
- o 상기와 같은 사업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비 (2억원)로는 부족하므로 사업비 투자 증액이 필요
- o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의 민간에 대한 해외농업투자정보에 대한 간접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단기적인 민간기업의 성공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 해외농업투자의 성공·실패 요인에는 공사의 정보제공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효과만으로 해외농업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농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투자제도, 관습 및 투자자의 경영역량 등도 포함됨
  - 해외농업투자 사업에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해외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6) 해외농업 환경조사의 활성화

- 현재의 조사방법(정책조사, 민간요청조사)에서 민간을 적극 유치하여 정부와 공동부담(Matching Fund 형식. 예를 들면 정부(8) : 민간(2))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이와 같은 환경조사를 위한 전담기관(예 : 일본의 해외농업개발협회)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해외협력 기구의 기능을 추가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각국의 농산물의 자유화가 가속되는 과정에서 각국의 농산물 생산형태가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낮아 국제적인 작황부진시 부분적인 공급부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한 완충 역할과 우리 농업 및 농자재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 해외투자는 국내에서의 발전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시도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누릴 수 없는 좋은 기회들을 향유할 수도 있으나 위험 또한 그 만큼 클 수 있음
  - 해외투자를 실행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 하고, 철저한 준비 작업이 있어야만 성공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적인 절차임
  
-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추진경위
  -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이주 확대를 위해 60년대 말부터 추진
  - 식량자급률 저하에 따라 유사시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 추진 검토
  - 정부(외교부·복지부가 공동주관)는 69~81년에 남미지역에 5개소 25천ha (459만 불 투자)의 남미지역 해외농장 건설하였으나 입지선정 부적절 및 경험부족, 부적격 이주농민 선발 등으로 실패
  
- 과거 해외농업개발은 '80년대 초까지 정부 주도로 남미지역에 투자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미흡과 사후관리 부실로 성과가 미흡하였고,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통일 이후 효율적인 식량 확보가 필요

- 정부는 투자유망 및 민간기업 투자희망지역의 영농환경조사 등 간접 지원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 및 투자지원방안” 을 수립(96.5.22 농림부)
- 조사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 관리 및 민간기업 해외투자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공사내에 “해외농업기술지원” 을 설치 (96.9.23)

o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의 목적은

- 민간의 해외농업투자 희망지역 및 투자유망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보 제공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 진출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
- 민간부문의 해외농업투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 겪게 되는 정보 및 기술부족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으로 해외농업투자 위험 최소화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간 경제협력기반 구축 및 대 개도국 교역여건 개선
- 정부가 필요로 하는 농업부문 FTA/DDA 협상 관련 자료 제공

■ 해외농업에 진출한 민간기업의 문제점으로

- o 해외농업투자는 농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고 단기간의 수익률이 낮아 장기적 투자와 규모 영농이 필요하지만, 해외진출 민간기업인이나 농민은 초기 집중 투자 및 단기적 투자비 회수 욕구와 소규모 영농으로 중도에 실패할 확률이 높음
  - 민간의 소규모 해외농업투자로 농작물 재배에 성공해도 유통과 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패 확률이 높음
  - 현지 영농조건이 유리해도 대규모 농장투자에는 관개시설, 저장 창고 및 가공시설 등이 필요하여 소규모의 민간 투자자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법령, 제도, 관습 등의 이해부족으로 기후, 곡물가격 및 정치적 상황 등으로 농산물 가격 편차가 심하여 투자의 위험성이 상존
  - 곡물가격 및 정치적 상황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편차가 심하여 민간투자자의 위험성이 상존
  - 인건비는 저렴하나 노동의 질과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양질의 대형 농기계 기사 등은 인력 이농현상, 농장피폐 등으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임
- o 민간 기업이 해외농업 직접투자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현지생산물이 해당국내에서의 처분이 어려울 때 이를 한국내로 거의 반입할 수 없다는 점임
    - 특히 콩, 옥수수 등은 수입시 대부분 관세가 300% 이상이 되어 이를 면세(0%)내지는 MMA 수입관세(0~2%) 수준으로 수입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점임
  - o 민간기업이 해외농업 직접투자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현지 관리의 어려운 점을 들 수 있음
    - 철저한 관리(수확물 도난, 농기계의 수리, 보수 등)를 위해서는 한국인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이 많이 듦
    - 현지인들을 고용할 때는 과다 비용청구, 수확농산물의 도난방지의 어려움이 있음

**■ 민간투자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로를 보장해주는 방안**

- o 대북식량 지원의 일환으로 러시아 연해주 지방이나 중국의 동북 3성 인근의 투자기업에게는 생산물(쌀, 콩, 옥수수)의 일정부분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

- 콩, 옥수수 등 국내 공급부족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일정량의 TRQ를 설정하여 '0' 세율 내지는 저율관세(1~2% 수준)로 수입을 허용하되, 단 유통공사가 일괄 구매하여 판매 후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동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안
- 동남아 등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생산한 쌀 등의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이를 대북 식량지원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
- 콩가루, 메주 등 가공식품의 경우도 국내농산물과 경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혜 관세,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 단,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해당국내에 반드시 판매한다는 조건이 필요함
- 현지 토지 임차료는 싸지만 건물 신축, 대형 농기계 구입 등은 물론 생산이 없는 1, 2년의 최소 운영비 등 상당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특히 투자자본의 회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민간 투자기업의 지역과 동일 내지 인근지역에서 한국국제협력사업단(KOICA) 사업의 일환인 전문가 파견, 훈련 등을 실시
- 개발협력기금(EDCF)도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분야에 우리기업을 우선하여 연결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상시 개발 예비비를 준비하여 민간기업에서 투자여건 등 현지 환경 조사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외교교섭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지역 개발, 품목개발 을 요청 하는 가를 파악토록 하여 즉시 민간기업에 전달하거나 우량기업을 선정 알선토록 함

## ■ 정부위주의 해외농업환경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 정부 정책 조사 위주로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투자 민간기업(기 투자 민간기업과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보다 막연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함
- 민간요청 조사도 조사비용의 한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못한 점
- 대부분 조사가 단발성에 그쳐 장기간 자료축적이 되지 못함으로 실제 투자시점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자료가 됨
- 해당국가의 농업외의 다른 시계열상의 자료 부족으로 전반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함

## ■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의 발전방안

- 대외적 사업홍보 강화 : 해외농업투자환경 소식지 발간
- 사업발전 세미나 개최 : 국·내외 해외농업투자 관련 전문가를 초청 하여 사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사업의 명확한 추진목표 설정 및 조사대상국의 다양화
  - 기존의 특정 국가에 대한 농업투자 정부 수집·제공에서 탈피하여 투자유망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사목표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

- 조사결과의 주기적 자료 보완 및 조사체계 확립으로 조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 제고
  - 조사시기가 5년이 지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2개국씩 분야별 보완조사 실시 및 민간부문의 해외 농업투자 성공, 실패사례 등을 조사하여 민간에 제공
  
- 민간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해외농업관련 최신 법률정보 수집 게시
  - 해외농업진출자(민간업체 및 개인) 및 상담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해외농업투자 현지 진출업체 및 개인과 공사 보유자료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성공 및 실패사례 조사)
  - 해외농업투자 정보센터 홈페이지 확대 정비 : 현재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현황 및 조사자료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홈페이지를 해외농업투자 회원가입·관리, 국가별 추가 수집자료 업데이트, 조사 미실시 국가의 농업투자관련 정보 등 게시와 해외농업진출 민간 부문과 향후 진출 희망자들 간의 정보교환의 장 마련을 위한 홈페이지 재설계 및 확대 정비
  - 해외농업통신원 확대 운영 : 기존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 민간기업 및 해외농업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현지 농업현황 및 투자현황 자료를 제공받아 민간에 제공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지원 작물 확대 요청으로 해외농업환경 조사사업 활성화 계기 마련
  - 현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 밀, 콩, 면화 외에 국내 자급율이 낮아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파악하여 사업신고 및 자금지원 대상 작물의 범위에 포함토록하고 수입관세는 면세내지 MMA 수입관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등 제도개선 건의

- 해외농업 환경조사의 활성화
  - 현재의 조사방법(정책조사, 민간요청조사)에서 민간을 적극 유치하여 정부와 공동부담(Matching Fund 형식. 예를 들면 정부(8) : 민간(2)으로 조사결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
  
- 상기와 같은 사업 활성화 방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비(2억원)로는 부족하므로 사업비 투자 증액이 필요
  
-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사업의 민간에 대한 해외농업투자정보에 대한 간접적 정보 제공을 통하여 단기적인 민간기업의 성공을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 해외농업투자의 성공·실패 요인에는 공사의 정보제공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효과만으로 해외농업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해외농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투자제도, 관습 및 투자자의 경영역량 등도 포함됨
  - 해외농업투자 사업에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해외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상기의 제반 해외농업개발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원의 “해외농업개발지원협회” (가칭 : 사단법인)를 설립하거나 초기단계의 과도한 비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사한 기구에 새로운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정책시행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 고 문 헌

- 국제농업개발원, “高(고)-露(로) 연해주농업개발협력지구 소식”, 「상업농경영」, 국제농업개발원, 2006년 2월, 7~8월호.
- 김인광, “밭해 땅 4억 평에 농사짓는 영농기업 아그로상생”, 『월간 조선』, 2006년 10월호
- 김정부,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 관련 법령과 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12.
- 석현덕, 『세계 목재시장의 여건변화와 목재의 안정적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 이병화, “세계 속의 한국농업”, 2005. 11. 13.
- 이재광, “옛 밭해 한국의 식량창고 된다”, 『Economist』, 2006. 11. 14.
- 이철·장대련, 『글로벌 시대의 국제마케팅』, 학현사, 2006.
- 장세진, 『글로벌경영』, 박영사, 2003
- 정정길, “중국의 농업투자환경 분석 -법적·제도적인 면에서-”, 「농촌경제」, 제22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년 여름호.
- 최용규, “최근 곡물수급동향과 해외농업투자 지원”,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년 여름호.

농림부, [www.mofat.go.kr](http://www.mofat.go.kr)

한국농촌공사, [www.ekr.or.kr](http://www.ekr.or.kr)

일본 농림수산성, [www.mfaff.go.jp](http://www.mfaff.go.jp)

일본 재무성, [www.mof.go.jp](http://www.mof.go.jp)

『農業經濟』, 第71卷 第11号, 昭和堂, 2005.9.



## <<설문지>>

### 해외농업 진출 실태분석 및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농업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분야 진출현황과 실태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을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불편함을 드린 점 이해해 주시고 귀하의 정성어린 응답은 본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나아가 해외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006년 11월

세계농정연구원

#### I. 일반사항

I-1. 귀하의 투자형태는 ?

① 개인 ② 사기업 ③ 공기업 ④ 단체 및 조합 ⑤ 기타(\_\_\_\_\_)

I-2. 귀하의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

(\_\_\_\_\_)

I-3. 귀하가 해외투자에 사용하신 투자자금은 얼마입니까 ?

( \_\_\_\_\_ )

I-4. 귀하가 투자하신 구체적인 품목은 ?

( \_\_\_\_\_ )

I-5. 귀하의 해외농업 진출 국가 및 지역은 ?

( \_\_\_\_\_ )

I-6. 연간 수출량(또는 생산량)은 ?

( \_\_\_\_\_ )

I-7. 귀하가 생산하신 농산물의 처리 방법은 ?

(각각의 처리방법별 생산량(매출량)과 전체생산에서 차지한 비율)

(\_\_\_\_) ① 투자국 내수시장 (매출량 : \_\_\_\_\_ 비율 : \_\_\_\_\_)

(\_\_\_\_) ② 우리나라로의 역수입 (매출량 : \_\_\_\_\_ 비율 : \_\_\_\_\_)

(\_\_\_\_) ③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 (매출량 : \_\_\_\_\_ 비율 : \_\_\_\_\_)

(\_\_\_\_) ④ 기타 (처리방법 : \_\_\_\_\_ 매출량 : \_\_\_\_\_ 비율 : \_\_\_\_\_)

## II. 해외농업투자 현황에 관한 내용

II-1. 귀하가 해외농업투자를 시작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 \_\_\_\_\_ )

II-2. 귀하가 해외농업투자를 위하여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_\_ )

II-3. 귀하는 해외농업투자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획득하였습니까 ?

( \_\_\_\_\_ )

II-4 귀하의 해외농업투자의 목적은 ?

( \_\_\_\_\_ )

### III 해외농업투자시 투자진출국 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

<보 기>				
전혀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 III-1. 투자진출국의 세제 및 법률제도            1 --- 2 --- 3 --- 4 --- 5
- III-2. 투자진출국의 임차제도                    1 --- 2 --- 3 --- 4 --- 5
- III-3. 투자진출국의 농자재 수급제도            1 --- 2 --- 3 --- 4 --- 5
- III-4. 투자진출국의 유통 및 물류 서비스제도    1 --- 2 --- 3 --- 4 --- 5
- III-5. 투자진출국의 수출입관리제도            1 --- 2 --- 3 --- 4 --- 5
- III-6. 투자진출국의 인력수급 및 관리제도      1 --- 2 --- 3 --- 4 --- 5

IV. 귀하가 생각하시는 해외농업투자 진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

※ 오랜 시간동안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